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權 五

韓國의 輸出保險制度 運營現況과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 Management of Export Insurance System in Korea

1994年 2月 2日

漢城大學校大學院

貿 易 學 科
貿 易 實 務 專 攻

趙 愛 子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權 五

韓國의 輸出保險制度 運營現況과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Improvement Strategics
for the Management of Export Insurance System in Korea

위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4年 2月 日

漢城大學校大學院

貿 易 學 科
貿 易 實 務 專 攻

趙 愛 子

趙愛子の 經營學 碩士學位論文을 認準함

1994年 2月 日

審査委員長 (인)

審査委員 (인)

審査委員 (인)

目 次

第 1 章 序 論	1
第 1 節 研究의 目的	1
第 2 節 研究의 方法과 範圍	3
1. 研究의 方法	3
2. 研究의 範圍	3
第 2 章 韓國의 輸出保險制度 實施와 經濟的 寄與度	4
第 1 節 輸出保險制度의 導入과 經濟的 與件	4
1. 輸出保險制度의 導入背景	4
2. 輸出保險制度의 發展과 對內外的 經濟與件	6
第 2 節 輸出保險制度의 法制化	8
1. 輸出保險制度의 法律的 特性	8
2. 輸出保險法令의 施行	12
3. 輸出保險法令의 改正推移	14

第 3 節 輸出保險運營方式과 運營種目	16
1. 輸出保險의 運營方式	16
2. 輸出保險의 運營種目	17
第 4 節 輸出保險運營의 正的 經濟寄與效果	23
1. 輸出保險引受와 輸出實績과의 相關性	23
2. 輸出保險支援과 關聯한 國內生産誘發效果	24
3. 輸出保險의 附加價值誘發效果	26
4. 輸出保險의 勞動誘發效果	27
5. 輸出保險의 輸入代替效果	29
6. 輸出保險種目の 産業聯關性	29
第 5 節 輸出保險運營의 負的 經濟波及效果	33
1. 輸出保險引受의 限界露出	33
2. 輸出保險支援의 偏重深化	34
3. 輸出保險의 認識缺如와 運營技術沈滯	35
第 3 章 韓國의 輸出保險制度 運營現況과 問題點	38
第 1 節 輸出保險基金의 造成과 擔保力	38
1. 政府支援中心의 基金造成	38

2. 輸出保險基金의 零細性과 擔保力	40
第 2 節 輸出增加에 따른 輸出保險의 活用性	41
1. 輸出增加와 輸出保險 活用率	41
2. 大企業 中心의 輸出保險 活用率	43
3. 輸出保險活用の 認識度 不足	44
第 3 節 輸出保險 引受種目과 引受地域	46
1. 輸出保險 引受種目の 集中性	46
2. 輸出保險 引受地域의 偏重性	47
第 4 節 輸出保險事故의 處理와 補償實績	49
1. 輸出保險 損害率의 增加	49
2. 輸出保險事故의 增加와 補償	51
第 5 節 輸出保險 信用調査의 實態	52
1. 輸出保險 信用調査基準의 劃一性	52
2. 輸出保險 信用調査技術의 落後	54
第 4 章 韓國의 輸出保險制度 改善方案	56
第 1 節 輸出保險의 擔保力 擴充과 政策遂行機關과의 紐帶強化	56

1. 政府支援中心의 輸出保險基金造成 脫皮	56
2. 對內 政策遂行機關과의 紐帶強化	57
第 2 節 輸出保險事故 補償規定의 整備 및 事後管理強化	58
1. 約款 및 關聯規定의 整備	58
2. 回收義務의 強化	59
第 3 節 輸出保險의 引受種目 開發 및 引受方法 改善	59
1. 保險商品의 開發과 調整	59
2. 包括引受方式의 擴大	61
3. 中小企業의 利用率 提高	62
4. 保險料率 體系의 持續的인 改編	62
5. 輸出保險의 國民經濟寄與를 위한 積極活用	63
第 4 節 輸出保險에 대한 弘報 및 對內外協力強化	64
1. 輸出保險에 대한 弘報活動의 強化와 專門家 養成	64
2. 對內外 協力強化	64
第 5 節 輸出保險 信用調查義務의 專門性 提高 및 情報體系構築	65
1. 輸出保險 信用調查業務의 效率性 提高	65
2. 國家別 信用度 評價資料의 確保와 電算網 構築	66

第 5 章 結 論	68
-----------------	----

ABSTRACT	70
----------------	----

參 考 文 獻	74
---------------	----

表 目 次

〈 表 - 1 〉 輸出保險法規體系	13
〈 表 - 2 〉 輸出保險法の 改正推移	15
〈 表 - 3 〉 輸出保險種目과 内容	22
〈 表 - 4 〉 輸出保險引受와 關聯한 輸出實績 (業種別 最終需要)	24
〈 表 - 5 〉 輸出保險支援에 의한 産業別 國內生産誘發效果	24
〈 表 - 6 〉 輸出保險支援에 의한 生産誘發度	25
〈 表 - 7 〉 輸出保險支援에 의한 産業別 附加價值誘發額	26
〈 表 - 8 〉 輸出保險支援에 대한 附加價值誘發度	26
〈 表 - 9 〉 輸出保險支援에 의한 雇傭誘發人員 및 比率	27
〈 表 - 10 〉 就業誘發人員 및 比率	28
〈 表 - 11 〉 輸出保險支援에 의한 輸入代替效果	29
〈 表 - 12 〉 主要輸出保險種目の 産業聯關分析(1988-1992年 期間中 累計) ...	31
〈 表 - 13 〉 産業別 影響力係數와 感應度係數	33
〈 表 - 14 〉 輸出保險基金 保有現況	39
〈 表 - 15 〉 韓國과 外國 輸出保險機關과의 擔保力 比較	41
〈 表 - 16 〉 輸出保險活用率 推移 (1983~1992年)	42
〈 表 - 17 〉 企業規模別 輸出保險利用現況 (1987~1992年 9月)	44
〈 表 - 18 〉 主要國의 輸出保險活用率 (1987~1991年)	45

〈 表 - 19 〉	輸出保險種目別 有效契約	47
〈 表 - 20 〉	地域別 輸出保險有效契約	48
〈 表 - 21 〉	年度別 輸出保險 事故補償実績	50
〈 表 - 22 〉	主要國・地域別 輸出保險損害率（ 1987～1991年 ）	50
〈 表 - 23 〉	事故類型別 輸出保險補償実績（ 1969～1992年 ）	51
〈 表 - 24 〉	地域別 輸出保險補償実績（ 1969～1992年 ）	52
〈 表 - 25 〉	等級別 商社信用調査現況	53
〈 表 - 26 〉	商社 信用調査現況	54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研究의 目的

輸出保險은 일반적으로 代金支給遲延 또는 拒絶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信用危險(Commercial Risk)과 輸入國에서 전쟁이나 내란 또는 換去來의 제한 등으로 발생하는 非常危險(Political Risk), 輸出業者의 輸出去來上의 豫測錯誤로 인하여 발생하는 企業保險 등을 補償對象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年 第 1次 經濟開發計劃에 따라 빈약한 資源條件을 극대화시키고 열악한 經濟狀況을 극복하기 위한 輸出主導型形 政策을 추진하여 오던 중 輸出保險制度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1968년에 輸出保險法을 制定하게 되었다. 이를 근간으로 1969년에는 政府代行機關인 大韓再保險公社에서 輸出保險業務를 시작하였다.

그 후 보다 효율적인 輸出支援政策을 추진하기 위하여 1977년에 韓國輸出入銀行으로 그 업무가 이관되었으나, 政府代行機關으로서의 輸出入銀行이 輸出保險業務遂行과 관련하여 制度上的 한계점과 保險基金不足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保險引受의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克服方案으로 輸出保險의 獨立全擔體制로서 輸出保險公社를 발족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이 制度가 1969년부터 20年以上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들어 輸出増大와 더불어 損害率이 급증한 까닭에 輸出保險自體의 운영을 통한 基金蓄積이 어려

운 실정이다. 또한 다양한 輸出保險種目이 있음에도 中·長期延拂輸出保險이나 輸出어음保險을 중심으로 운영이 된 이유로 다른 종목의 引受實績이 저조한 양상도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年 동안의 輸出利用率도 지극히 낮은 실정에 처해 있다.

오늘날 東歐圈 國家의 體制變革과 UR協商의 進展, 그리고 經濟블럭화 등과 같은 世界經濟秩序의 개편에 따른 貿易環境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對外去來에서 발생할 수 있는 信用危險, 非常危險, 企業危險 등을 擔保함으로써 輸出을 지원하는 貿易政策手段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여 輸出을 증대시키고 國民經濟發展에 寄與도가 높은 輸出保險制度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輸出保險制度가 처한 운영 현실을 극복하고 그 活用度を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輸出保險制度의 운영현황을 살펴 그 문제점을 導出하여 改善方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輸出保險制度의 도입 배경과 輸出保險制度和 관련한 法制化側面, 그리고 經濟的 寄與度を 이론적 근간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輸出保險制度에 대한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낸 후 輸出保險制度의 운영에 대한 그 改善方案을 제시하는데 本 研究의 目的을 두고자 한다.

第 2 節 研究의 方法과 範圍

1. 研究의 方法

本 論文에서는 文獻 및 統計資料를 근거로 한 理論的 研究方法을 취하였다. 輸出保險에 대한 導入과 經濟的 效果에 대한 理論的 考察에서는 國內外에서 刊行된 書籍 및 論文資料를 주로 활용하였다. 輸出保險制度의 運營現況에 대하여는 實際적인 統計資料를 토대로 문제점을 分析하고 그의 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2. 研究의 範圍

本 研究에서는 研究範圍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였다. 序論에서는 本 研究의 目的과 研究의 方法 및 範圍를 제시하였다. 第 2 章에서는 韓國의 輸出保險의 導入과 그 經濟的 與件, 그리고 輸出保險制度和 관련한 法制化의 過程과 改正推移 및 輸出保險運營方式과 運營種目과 함께 輸出保險의 運營과 관련한 經濟的 寄與度を 고찰하여 理論的 근거로 삼았다. 第 3 章에서는 韓國의 輸出保險制度의 運營現況을 輸出保險基金의 造成과 擔保力, 輸出增加에 따른 輸出保險의 活用性, 輸出保險引受種目과 引受地域, 輸出保險事故의 處理와 補償, 輸出保險 信用調查의 實態를 分析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第 4 章에서는 第 3 章에서 도출되어진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韓國의 輸出保險制度의 運營에 대한 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第 5 章에서는 研究한 內容을 要約하여 結論을 맺었다.

第 2 章 韓國의 輸出保險制度의 實施와

經濟的 寄與度

第 1 節 輸出保險制度의 導入과 經濟的 與件

1. 輸出保險制度의 導入背景

우리나라에서의 輸出保險制度의 필요성은 1962年 第 1次 經濟開發計劃實施 이후 빈약한 資源條件과 열악한 經濟活動을 극복하기 위해 政府가 輸出에 대한 金融政策 및 稅制支援政策을 강화함과 동시에 제기되기 시작하였다.¹⁾

따라서 政府는 經濟의 高度成長을 위해 輸出増大를 더욱 가속화하는 데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가능한 모든 支援을 아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國際貿易環境 속에서 지속적으로 輸出伸張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주요 輸出競爭國과 같이 無信用狀 輸出去來와 中·長期延拂輸出去來까지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게다가 輸出市場 自體도 美·日中心에서 政治, 經濟, 社會적으로 다소 안정되지 못한 國家에까지 輸出市場을 多變化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었다.²⁾ 그러나 輸出業者의 입장으로서 과감한 輸出을 하는데는 그만큼 輸出代金回收上의 危險負擔이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政府는 지속적인 輸出伸張을 위

1) 韓國輸出保險公社, 輸出保險 第3號, 1993, 38~39面.

2) 上揭書, 106面.

하여 貿易去來에서 발생하는 危險中 通常의 保險으로는 주체할 수 없는 危險으로부터 輸出者를 보호하기 위한 制度的인 裝置, 즉 輸出不能, 輸出代金未回收危險 등으로 부터 輸出者를 보호하고, 이들 輸出者에게 輸出金融을 支援한 金融機關이 입는 損失을 補償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8年 6월에 개최된 經濟長官會議에서 輸出保險의 운영 주체는 政府가 되고, 실질적인 업무와 기금의 관리는 大韓保險公社가 政府代行機關으로 수행하는 案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아 1968年 12月 31일에 法律 第 2063號로 공포하였다.³⁾ 이와 같이 輸出貿易 其他對外去來에서 발생하는 통상의 保險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財産上의 손실을 補償하는 保險制度를 확립함으로써 輸出貿易, 對外去來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輸出保險法이 설립된 것이다. 이어 1969年 1月에도 輸出保險施行規則을 공포함으로써 1969年 2月 18일부터 본격적으로 輸出保險業務를 개시할 수 있었던 기반을 마련하였다.

초기의 輸出保險法에서는 5개 종류의 輸出保險을 규정하고 있었다.⁴⁾ 또한 輸出保險基金의 限度率을 50억원으로 하였으며 引受限度率은 基金의 20倍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輸出保險事業은 財務部長官이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는 이 制度의 시행에 있어서 商工部가 貿易業界, 金融機關, 學界, 其他經濟團體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왔으나 輸出保險이 他保險에 비하여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다 운영상 고도의 保險技術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國內의 保險政策과 監視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財務部가 管轄하게 되었던 것이다. 실질적인 업무와 기금의 관리는 國內에서 保險을 다루고 있는 유일한 政府投資企業體

3) 趙相元 編著, 1993年 法典, 玄岩社, 1993, 2362面 參照.

4) 즉 一般輸出保險, 輸出金融保險, 中·長期延拂輸出保險, 委託販賣輸出保險 등이다.

인 大韓再保險公社가 代行하도록 하였다.

2. 輸出保險制度의 發展과 對內外的 經濟與件

韓國의 輸出保險制度는 1968年 12月 輸出保險이 制定되고 1969年 大韓再保險公社의 설립으로 輸出保險業務가 개시된 이래 20餘年이 지났다. 輸出保險制度는 對內外的 貿易環境의 변화에 따라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 발전과 對內外的 與件과는 깊은 관계가 있다.

導入期(1969~1974年)⁵⁾에는 對內的으로 우리나라에서 第 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추진되던 시기다. 輸出振興政策이 多樣化되기 시작하였으며 輸出第一主義 政策도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 輸出保險法이 제정되고 輸出保險業務가 개시(1969年 2月)되었다. 管掌部處로는 財務部가 代行機關으로는 大韓再保險公社가 있었고 運營種目は 5개 종목이었다. 그 후 導入期 후반인 1972年 12월에 海外投資保險을 도입하였다.

成長期(1975~1980年)는 對外的으로 EC國家의 浮上과 日本, 獨逸 등 新興工業國家의 經濟적 지위향상을 비롯 中東 OPEC國家가 浮上하는 등 國際貿易秩序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시기였다. 對內的으로는 中東中心의 海外建設景氣의 好調와 産業構造高度化를 위한 重化學工業 育成計劃이 추진된 시기였다. 이에 따라 輸出保險 政府代行機關을 大韓再保險公社에서 韓國輸出入銀行으로 변경하였다. 輸出保險管掌部處도 財務部에서 商工部로 옮겼다. 또한 保險契約締結限度額을 基

5) 輸出保險制度의 發展에 따른 時代區分은 韓國輸出保險公社에서 發刊한 中長期 運營計劃 31~33面을 引用한 것임.

金の 30倍로 増額하였다. 保險種目に 있어서는 海外建設工事保險⁶⁾과 輸出保證保險⁷⁾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國際信用投資保險者聯盟國⁸⁾에 1977年 6월에 正식으로 가입하였다.⁹⁾

成熟期(1981~1986年)에는 美國, EC, 日本의 3國經濟體制로 世界經濟가 再編되기 시작하였다. 對內的으로는 産業構造改編政策 및 國際競爭力強化政策이 추진되었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輸出信用情報센터를 설치 운영하였다.¹⁰⁾ 또한 保險種目に 있어서 輸出代金金融保險,¹¹⁾ 中·長期延拂輸出,¹²⁾ 輸出保證保險 包括保險制度¹³⁾를 도입, 실시하여 引受實績을 대폭 증가시켰다.

停滯期(1987~1989年)에는 對外的으로 新保護貿易主義의 심화에 따른 通商摩擦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對內的으로는 海外建設景氣가 현격히 退潮하였으며 先進貿易 및 金融制度基盤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保險種目に 있어서는 이 시기에 船舶에 대한 中·長期延拂輸出保險 包括保險適用을 유예시켰다.¹⁴⁾ 그리고 中東諸國의 石油輸出에 따른 輸入減少로 인해 海外建設輸出이 급격히 감소하여 建設輸出保險 등의 引受實績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輸出어음保險 包括制度改善에 따라¹⁵⁾ 引受構造가 변하고 引受實績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¹⁶⁾

再跳躍期(1990年~現在)에는 對外的으로 東歐圈의 몰락과 東·西兩極體制의

6) 1976年 12月 導入.

7) 1978年 12月 導入.

8) Berne Union: The International Union of Credit and Investment Insurers.

9) 韓國輸出保險公社, 輸出保險 第3號, 1992, 111~113面.

10) 1981年 實施.

11) 1981年 3月 導入.

12) 1980年 7月 導入.

13) 1981年 1月 導入.

14) 1986~1988年.

15) 1989年 4月.

16) 韓國輸出保險公社, 中長期運營計劃(1993~1997年), 1993, 31~32面.

개편으로 인해 國際貿易秩序가 개편됨과 동시에 市場開放要求가 漸増되는 시기이다. 對內的으로는 國內資金上昇 등으로 인해 海外投資가 증가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輸出保險全擔機構로 韓國輸出保險公社를 설립하였으며,¹⁷⁾ 輸出信用保證制度도 실시하였다.¹⁸⁾

第 2 節 輸出保險制度의 法制化

1. 輸出保險制度의 法律的 特性

(1) 輸出保險契約法の 法源¹⁹⁾

輸出保險의 保險契約에 관련된 法律關係를 규정하는 것은 1次的으로 商事自治法規인 輸出保險約款이다. 한편 輸出保險法은 政府의 輸出保險引受權 등을 부여하는 財政的인 授權法の 性格을 지니지만 그 內容은 輸出保險의 保險關係를 규정하는 約款法の 基礎構造를 정하는 保險契約法部分과 輸出保險事業運營의 基本方針과 制約을 정하는 保險企業의 主體에 관한 保險事業法部分으로 구성되어 있다.

輸出保險契約의 保險關係는 私法關係이며,²⁰⁾ 輸出保險法에 의한 公法的 規律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輸出保險法 이외의 私法體系, 특히 商法の 規定이 보

17) 1992年 設立.

18) 1992年 11月 實施.

19) 李時煥, 貿易保險論, 大旺社, 1992, 307面.

20) 貿易實務講座刊行會 編, 貿易と保險(貿易實務講座 第5卷), 有斐閣, 1966, 280面.

충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政府가 인수하는 輸出保險契約의 표준적인 契約條項, 즉 約款은 輸出保險法の 규정을 기초로 하여 정해져 있으며, 실제로 모든 輸出保險契約에는 별도의 特約이 없는 한 우선 이 輸出保險約款이 적용된다. 이러한 保險契約은 이른바 附合契約에 속한다고 하며 約款에 조항이 없는 것은 輸出保險法과 이에 의한 命令 또는 商法の 규정을 적용한다.²¹⁾

(2) 輸出保險契約에 대한 被保險利益의 限定²²⁾

輸出保險制度는 保險이라고 하는 技術적인 형태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保險團體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保險者는 당연히 保險技術的 要請으로서 개별적인 保險契約에 대해 危險의 선택, 즉 被保險物의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制度的 解決方法으로서, 첫째 保險利益의 定型化, 둘째 危險의 逆選擇의 防止, 셋째 被保險者의 合理的인 企業努力의 要請 등 세 가지 사항을 들 수 있다.²³⁾

① 被保險利益의 定型化²⁴⁾

輸出保險法 第 1條는 輸出保險制度는「通常의 保險으로는 救濟하기 곤란한 危險」을 保護하는 것이라는 뜻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海上保險, 火災保險 등에 의해 補償되는 貨物의 滅失·損傷과 같은 物的 損害와 共同海損, 救助料 등의

21) 각종 輸出保險約款上的 “適用法令” 條項 參照.

22) 輸出保險法 第8條 參照.

23) 李時煥, 前掲書, 308~312面.

24) 輸出保險法 第1條: 上掲書, 309面 參照.

費用損害에 관계되는 被保險利益은 輸出保險契約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

保險의 對象이 되는 輸出貿易과 其他 對外去來는 일체의 貿易活動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輸出保險法의 취지에서 볼 때 輸出振興이라고 하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輸入保險制度의 창설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保險對象의 선택은 保險團體로서의 合理的 經營을 유지하기 위해 同質의 危險選擇과 事故發生의 平均化를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輸出貿易과 其他 對外去來중에서도 가장 정형적이고 정상적인 契約類型과 去來類型이 선택된다. 輸出保險法에서 예정하고 있는 保險의 對象이 되는 契約類型 및 去來類型은 輸出契約, 委託販賣輸出契約, 供給契約,²⁵⁾ 海外建設工事契約, 海外建設用役契約, 海外投資 등이 있다.

輸出保險의 對象이 되는 去來類型에 관해 發生하는 危險中에서도 保險의 種類에 따라서는 특정의 危險에 관한 保險事故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만 補償한다.

② 危險의 逆選擇의 防止²⁶⁾

保險者側에서는 危險을 일반적·정형적으로는 선택할 수 있지만 危險의 측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事項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保險契約者側에 존재하는 危險의 蓋然性에 관한 개성적인 판단을 무시할 수 없다.²⁷⁾

따라서 保險契約者側에 있어서의 危險의 逆選擇을 배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逆選擇은 保險者에게 불리한 保險事故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25) 輸出保險法 第2條 參照.

26) 輸出保險法 第7條; 李時煥, 前掲書, 309~310面 參照.

27) Sundheim Finn A., *How to Insure a Business*, Venture Publications, 1988, p.266 參照.

危險을 保險契約者가 자진하여 保險의 目的으로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輸出保險의 경우에는 信用危險의 개별적 차이의 폭이 크므로 保險契約者側에서 危險을 逆選擇할 여지가 많고 또 非常危險에 의한 保險事故의 同時多發性 때문에 근소한 逆選擇일 경우에도 巨額의 保險事故를 초래하게 되므로 危險의 分散과 逆選擇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輸出保險制度에 있어서는 保險責任時期의 制限(After Loss 制度), 附保期限의 制限, 締約強制 등을 사용하여 逆選擇을 防止하고 있다.

③ 被保險者の 合理的인 企業努力에 의한 損失의 輕減²⁸⁾

危險이 선택된 후에도 선택된 危險, 附保된 被保險利益에 관하여 생기는 損失의 발생 및 그 범위를 가능한 한 防止·輕減한다고 하는 回復的, 補正的인 制度가 마련되어 있다.

保險制度는 우연한 事故로 인한 損害의 補償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損害는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損害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발생한 損害에 대해서만 補償한다고 하는 事故方式이 그 바탕에 있다.

그러므로 輸出保險에서도 損失發生의 防止 혹은 輕減을 위한 被保險者の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の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발생한 損失의 免責,²⁹⁾ 被保險者の 損失防止·輕減義務³⁰⁾ 등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被保險者가 損失의 일부를 부담하는 一部保險制를 채용함으로써 公正性を 더하고 있다. 또한 保險支給 후에 保險의 목적이나 第3者에 대하여 가

28) 李時煥, 前掲書, 310面.

29) 商法 第659條 1項

30) 商法 第680條 1項

지는 被保險者 또는 保險契約者의 權利를 취득하는 保險者代位制度를 적용하고 있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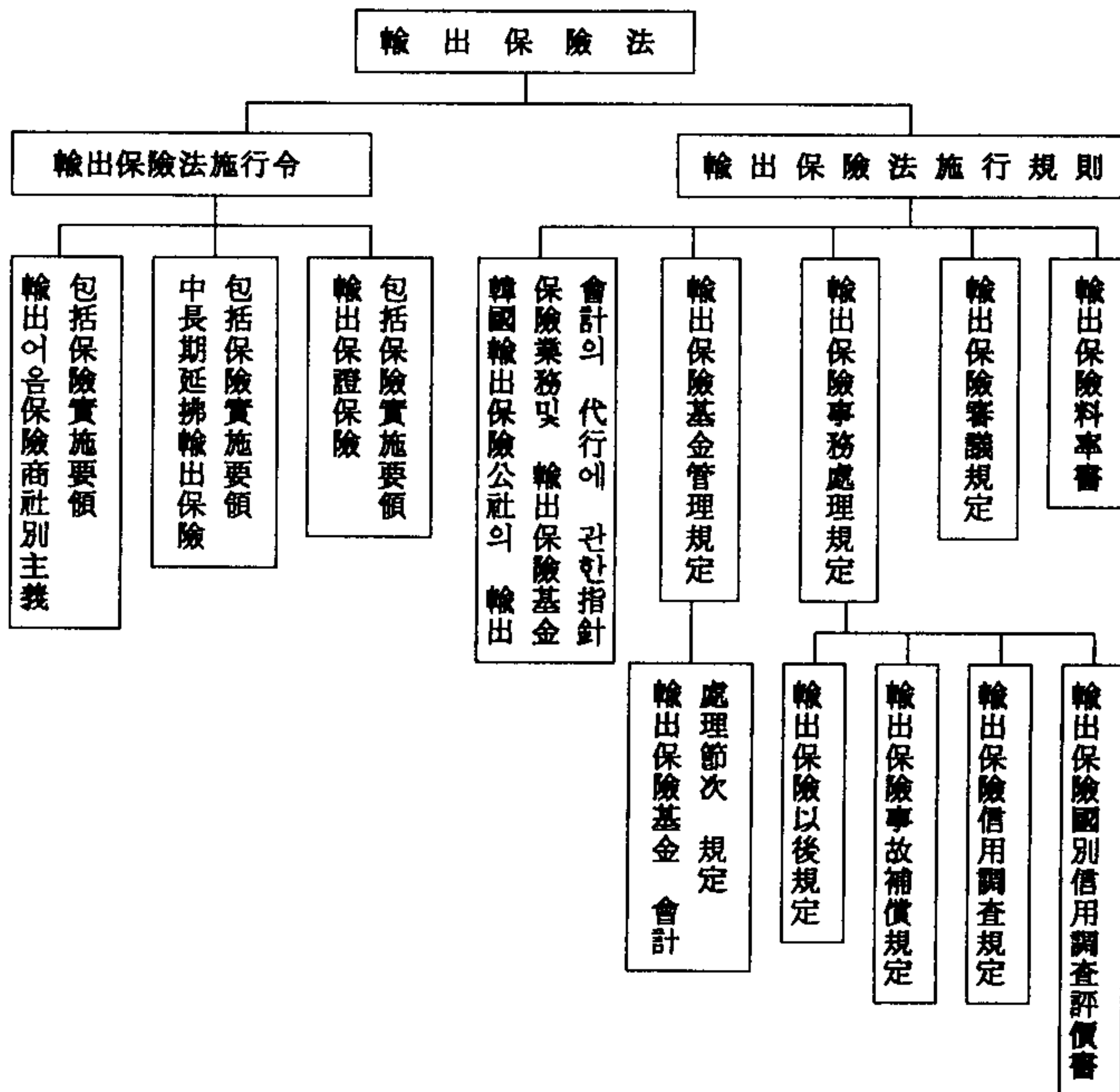
2. 輸出保險法令의 施行

우리나라에서는 輸出貿易 其他對外去來에서 發生하고 通常의 保險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危險으로 인한 財産上の 損失을 補償하는 保險制度를 확립함으로써 輸出貿易과 其他 對外去來의 진흥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1968年 12月 31日 輸出保險法이 制定·公布되었다. 이어서 1969年 1月 22日에는 大統領令 第 3743號로 「輸出保險法施行令」이 制定·公布됨에 의해 1969年 2月 18日부터는 大韓再保險公社가 政府代行機關으로서 輸出保險業務를 개시함으로써 본격적인 輸出保險業務가 시작되었다.³²⁾

31) 輸出保險法 第5條 2項.

32) 韓國輸出保險公社, 輸出保險 第3號, 16面.

〈表 - 1〉 輸出保險法規體系



資料：韓國輸出保險公社，中·長期運營計劃(1993~1997)，1993，pp. 34~35參照；
趙相元 編著，1993年 法典，玄岩社，1993。

輸出保險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諸般業務는 크게 保險引受, 事故補償, 信用調查, 基金管理 및 其他附隨業務로 구분되며 이와 같은 輸出保險業務는 輸出保險法令 및 諸規程이 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輸出保險法令은 輸出保險의 特殊性和 專門性에 따라 特別法으로 제정된 輸出保險法을 基本法으로 하여 이의 내용을 보완하는 輸出保險法施行令, 輸出保險法施行規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諸規程은 輸出保險法令에서 委任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商工資源部訓令, 告示 및 각 분야별 업무처리의 세부기준을 정한 實務規程으로 구성되어 있다.

3. 輸出保險法令의 改正推移

輸出保險事業運營의 근간을 이루는 輸出保險法은 法 制定이후 國內外的 貿易去來 및 輸出市場의 環境變化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³³⁾ 그 동안 輸出保險制度의 擴大改編을 통해 각종 保險種目的 擔保範圍를 확대하였고 保險金 支給率引上 등을 꾀하며 발전을 거듭하였다. 효과적인 輸出支援의 강화를 위해 輸出保險運營主體의 변경도 있었으며 危險分散의 적정화를 위한 再保險의 실시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外的 環境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진 輸出保險法의 改正推移를 살펴보면 다음 < 表 - 2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3) 上掲書, 107面.

〈 表 - 2 〉 輸出保險法の 改正推移

개정구분	개정일자	주요내용
제 1차 개정 (법률제2167호)	1970. 1. 1	· 일반수출보험의 담보범위확대 · 수출금융보험의 보험계약자에게 한국수출입은행 추가
제 2차 개정 (법률제2422호)	1972. 12. 30	· 해외투자보험제도신설 · 보험금 지급율인상(위탁판매수출보험: 80~90%)
제 3차 개정 (법률제2952호)	1976. 12. 31	· 해외건설공사보험제도신설 · 수출보험정부대행기관을 대한재보험회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으로 변경
제 4차 개정 (법률제3107호)	1979. 12. 5	· 재보험제도실시근거신설 · 수출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계약체결제도의 배수를 20배에서 30배로 변경 · 수출보증제도신설 · 수출보험사업의 관장기관을 재무부에서 상공부로 변경 · 수출보험심의회의 설치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상공부로 변경 · 수출보험기금의 결산이익을 기금에서 전입하지 않고 전액적립하도록 변경
제 5차 개정 (법률제3399호)	1981. 3. 27	· 수출보험인수한도 배수제의 철폐 · 수출대금금융보험신설 · 보험자대위권의 명문화 ·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설립근거 마련 · 수출신용보증제의 도입

資料: 韓國輸出保險公社, 中·長期運營計劃(1993~1997), 1993, 33~34面;
趙相元, 前葛書, 2362面 參照.

1970年の 1次 改正에서는 一般輸出保險의 擔保範圍의 확대와 함께 輸出金融保險의 保險契約者로 韓國輸出入銀行을 추가하였다. 1972年の 2次 改正에서는 海外投資保險制度의 신설과 함께 保險金의 支給率을 引上하였다. 1976年の 3次 改正에서는 海外建設工事保險制度 신설과 함께 輸出保險 政府代行機關을 大韓再保險公社에서 韓國輸出入銀行으로 변경하였다.

1979年の 4次 改正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즉, 再保險制度의 실시 근거가 신설되었고, 輸出保險基金에 의한 保險契約締結限度의 倍數를 20倍에서 30倍

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輸出保險制度를 신설하였고, 輸出保險事業의 管掌機關을 財務部에서 商工資源部로 변경하는 한편, 輸出保險審議會議 설치를 韓國輸出入銀行에서 商工資源部로 변경하였다. 또한 輸出保險基金의 決算利益을 基金에서 전입하지 않고 전액을 적립하도록 변경하였다.

1981年の 5次 改正에서는 輸出保險引受限度의 倍數制를 철폐하고 輸出代金金融保險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保險者代位權을 明文化하였고, 韓國輸出保險公社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輸出信用保證制度를 도입하였다.

第 3 節 輸出保險運營方式과 運營種目

1. 輸出保險의 運營方式

輸出保險의 운영방식은 輸出業者 또는 外國換銀行 등 保險契約者の 선택에 따라 개개 輸出物件別로 保險契約를 체결하는 個別保險引受方式과 個別契約者와 保險者가 사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特約을 체결하고 特約에 해당하는 輸出物件의 전부에 대하여 保險契約者가 자동적으로 保險에 附保하고 保險者는 의무적으로 인수하는 包括保險引受方式의 두 가지가 있다.³⁴⁾ 保險契約者는 모든 保險種目に 관하여 個別保險으로 附保하든 선택하여 輸出保險을 활용할 수 있다.

34) 加藤修, 貿易保險の實務, 同文館, 1985, 243面.

2. 輸出保險의 運營種目³⁵⁾

(1) 一般輸出保險³⁶⁾

우리나라의 輸出去來는 國內의 輸出業者가 輸入業者로 부터 取消不能貨換信用狀(Irrevocable Documentary Letter of Credit)을 개설받아 船積時에 代金を 결제하는 信用狀方式에 의한 거래가 대부분이다. 一般輸出保險은 이것을 전제로 하여 제정된 것이며 輸出契約締結後 輸出代金回收까지의 과정 중에서 海外에서 발생하는 非常危險과 信用危險으로 인하여 輸出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代金を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輸出業者 또는 生産業者가 입게 되는 損失을 補償하여 주는 保險이다. 이에는 輸出者保險,³⁷⁾ 生産者保險, 增加保險 등 3가지가 있다.

(2) 輸出金融保險³⁸⁾

輸出金融保險은 輸出을 위한 生産, 加工, 集荷資金을 融資한 金融機關이 融資金을 回收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損失을 補償해 주는 保險이다. 즉, 輸出金融保險은 金融機關이 輸出業者, 生産業者, 對外軍納業者 또는 海外에서 建設業을 영위하거나 用役을 의뢰하는 자에게 生産, 集荷, 加工에 필요한 資金을 어음貸出 또는 割引形式으로 융자한 후 융자받은 輸出業者 등이 輸出不能, 引導不能, 代金回收不能 등의 事由로 金融機關이 融資金을 滿期에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金融機關이 입게 되는 損失을 補償하는 保險이다.³⁹⁾ 이 保險은 주로 船積前의 輸

35) 輸出保險法 第9條~第29條의 15 參照.

36) 輸出保險法 第2章 第9條~第11條 參照.

37) 加藤修, 前掲書, 254面.

38) 輸出保險法 第3章 第12條~第16條 參照.

39) 加藤修, 前掲書, 258~261面.

出轉貨金融을 保險 대신으로 하는 점에서 船積後의 輸出金融을 保險의 대상으로 하는 輸出어음保險과 구분된다. 그리고 輸出金融保險에 있어서의 保險契約者 및 被保險者는 銀行法 第 3條에 규정된 金融機關과 韓國輸出入銀行이 된다.

(3) 輸出어음保險⁴⁰⁾

輸出어음保險이란 外國換銀行이 輸出業者가 발행한 信用狀이 수반되지 않은 D/A條件⁴¹⁾이나 D/P條件⁴²⁾의 貨換어음을 買入한 후 어음滿期日에 貨換어음代金を 回收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銀行의 損失을 補償하기 위한 保險이다.

일반적으로 輸出代金の 決濟는 信用狀베이스로 하게 되지만 輸出競爭이 격화 하면 輸出業者에게 유리한 信用狀決濟를 강요해 가지고는 去來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信用狀이 수반되지 않은 D/A, D/P어음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信用狀이 수반되지 않은 輸出去來에 있어서는 輸入者가 과연 輸出代金を 확실히 決濟하여 줄 것인지 불안이 따르게 됨으로 無信用狀의 貨換어음에 대하여는 買入을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D/A, D/P어음에 대해 外國換銀行이 안심하고 買入할수 있도록 하여 輸出業者를 간접적으로 保護하고자 하는 保險이다.⁴³⁾

(4) 中·長期延拂輸出保險⁴⁴⁾

中·長期延拂輸出保險은 資本財의 輸出促進을 위한 保險으로써 輸出代금이 6個月 이상 10年 이내에 決濟되는 延拂輸出을 하였을 때 非常危險이나 信用危險이

40) 輸出保險法 第4章 第17條~第21條 參照.

41) 梁嘆煥, 吳元爽, 徐正斗 共著, 信用狀論, 三英社, 1993, 310面.

42) 張英俊, 現代貿易學原論, 經世院, 1990, 565面.

43) 金容福, 貿易實務, 博英社, 1993, 144面.

44) 輸出保險法 第5章 第22條~第26條 參照.

발생하여 代金回收不能 또는 債務의 이행 자체가 소멸되어 輸出業者가 입게 되는 損失을 補償하여 주는 保險이다. 中·長期延拂輸出을 촉진하기 위한 資金面의 지원은 韓國輸出入銀行이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債券回收面의 危險은 中·長期延拂輸出保險制度로 보호해 주고 있다.⁴⁵⁾

(5) 輸出代金金融保險⁴⁶⁾

輸出代金金融保險은 購買者信用方式의 賣出에 따른 融資金의 未回收危險을 擔保하는 輸出保險이다. 購買者信用方式에 의하면 輸出者는 輸出契約商品의 船積時까지 輸出代金を 自國의 銀行으로 부터 現金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유리하지만 貸出銀行側으로서는 그 輸入者 또는 轉貸銀行이 融資金을 約定期間內에 決濟하여 줄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따른다. 이러한 貸出銀行의 불안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우리 나라의 資本財와 플랜트 輸出을 擴大·振興케 하기 위한 保險이 輸出代金金融保險이다.

(6) 委託販賣輸出保險⁴⁷⁾

委託販賣輸出保險은 輸出業者가 受託販賣의 形式으로 貨物을 輸出할 경우에 現地에서의 販賣가 예상대로 안되어 그 貨物의 輸出과 販賣를 위하여 支出한 費用을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輸出業者가 입게 되는 損失을 補償하는 保險이다.

그런데 이러한 方式⁴⁸⁾에 의한 輸出은 保險契約者는 누구라도 상관이 없으나

45) 金政秀, 海上保險論, 博英社, 1992, 761面.

46) 輸出保險法 第5章의 2 第26條의 2~6 參照; 申東洙, 貿易實務, 法經社, 1993, 715面.

47) 輸出保險法 第6章 第27條~第29條 參照; 金政秀, 前掲書, 764面.

48) 英國에서는 이 保險과 유사한 制度로서 在庫維持保證保險이 있는데, 2~3年

被保險者は輸出者が 되어야 한다. 또한 受託販賣輸出保險은 개개의 短期的인 去來를 단위로 하여 擔保하는 것이다.

(7) 海外投資保險⁴⁹⁾

海外投資保險은 海外投資를 한 者が 投資한 株式이나 不動産에 대한 權利 등을 非常危險에 의하여 投資資金을 回收할 수 없게 되었거나 投資에서 발생한 過失을 送金할 수 없게 되었을 때 投資者가 입게 되는 損失을 補償하는 保險이다.

이 保險은 海外投資를 적극적으로 支援함으로써 輸出市場의 維持내지 擴張과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經濟의 安定的 成長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制度이다.

(8) 海外建設工事保險⁵⁰⁾

海外建設工事保險은 非常危險이나 信用危險으로 인하여 당해 海外工事의 代金を 回收할 수 없게 된 경우 海外建設業者가 입게 되는 損失을 補償하여 주는 保險이다. 대부분 海外建設이 開發途上國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政治·經濟的 危險이 隨伴되고 특히, 海外工事發注國에서의 각종 危險은 當事者에 있어 不可抗力일 경우가 많으므로 損失의 補償은 民間海外投資者를 保護하기 위한 것이다.

의 長期에 걸친 계속적인 販賣活動에 적합한 保證方式을 취하고 있다.

49) 輸出保險法 第6章의 2 第29條의 2~5參照: 申東洙, 前掲書, 718面: 加藤修, 前掲書, 270面.

50) 輸出保險法 第6章의 3 第29條의 6~10參照: 金政秀, 前掲書, 766~767面.

(9) 輸出保證保險⁵¹⁾

輸出保證保險은 플랜트輸出이나 海外建設工事에서 필요로 하는 保證書, 즉 본드發行에 따른 危險負擔을 補償해 주는 保險이다. 일반적으로 플랜트輸出이나 海外建設工事의 경우에는 海外의 發注者로 부터 당해 輸出이나 工事を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이행할 것을 保證하는 保證書의 제출을 요구받는 것이 通例이며, 受注者는 이 保證書を 去來銀行 또는 保險會社로 부터 발행 받는다. 이와 같이 保證書を 요구하는 것은 受注者가 과연 約定한 대로 契約을 이행해 줄 것인가에 대하여 發注者가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드發行의 危險負擔을 輕減시키려고 마련한 것이 輸出保證保險制이다.

즉, 海外建設業者, 海外建設用役提供者 또는 輸出者の 요청에 의하여 海外建設工事契約, 海外建設用役契約 또는 輸出契約에 관한 輸出保證을 하고 外換銀行이 당해 輸出保證의 상대방으로 부터 請求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損失을 補償하는 保險이다.

51) 輸出保險法 第6章의 4 第29條의 11~15參照: 申東洙, 前掲書, 722面;
加藤修, 前掲書, 267~268面.

〈 表 - 3 〉 輸出保險種目과 內容

保險의 種類		被保險者	請約時期	保險金額	補償金額
一般輸出保險	輸出者保險	輸出者	輸出契約締結後 船積前	輸出契約額의 90% 範圍內	損失額의 90%
	生産者保險	生産者	輸出契約締結後 船積前	供給契約額의 90% 範圍內	損失額의 90%
	增加費用保險	輸出者	輸出契約締結後 船積前	自由로 이 競合	損失額의 90%
輸出金融保險		金融機關	融資日로부터 5營業日 以內	融資額의 90%	損失額의 90%
輸出어음保險	個別保險	外國換銀行	買入日로부터 5營業日 以內	어음金額의 90%	損失額의 90%
	包括保險	外國換銀行	買入日로부터 5營業日 以內	어음金額의 90%	損失額의 90%
中長期延拂輸出保險	個別保險	輸出者	○ 豫備申請 - 輸出契約締結前 ○ 本請約 - 船積3個月前	延拂原理金의 90% 範圍內	損失額 保險金額 × 保險價額
	包括保險	輸出者	○ 假請約 - 輸出契約締結前 ○ 本請約 - 船積3個月前	延拂原理金의 70% 範圍內	損失額의 70%
輸出代金金融保險		金融機關	○ 豫備申請 - 金融契約締結前 ○ 本請約 - 資金供與3個月前	貸出原理金의 70% 範圍內	損失額 保險金額 × 保險價額
委託販賣輸出保險		輸出者	貨物船積前	委託販賣輸出契約額의 90%範圍內	損失額의 90%
海外投資保險	"株式等"保險	海外投資者	○ 豫備請約 - 投資契約締結前 ○ 本請約 - 投資日로부터 1月 以內	海外投資額(利子 또는 豫想配當額 包含)의 90%以內	損失額의 90%
	"貸附金債券"保險				
	"私債等"保險				
	"不動産에 관한權利"保險				
海外建設工事保險		海外建設業者	○ 豫備申請 - 工事契約締結前 ○ 本請約 - 工事開始3個月前	海外工事對價(先收金除外)의 80% 範圍內	損失額의 90%
輸出保證保險	個別保險	外國換銀行	保證書(Bond)發給後 5營業日 以內	保證金額의 70% 範圍內	損失額 保險金額 × 保險價額
	包括保險	外國換銀行	保證書(Bond)發給後 5營業日 以內	保證金額의 50%	損失額의 50%

資料: 輸出保險法, 第9條~第29條의 15; 李時煥, 前掲書, 340~342面;
申東洙, 前掲書, 703~722面; 加藤修, 前掲書, 274~283面.

第 4 節 輸出保險運營의 正的 經濟寄與效果⁵²⁾

1. 輸出保險引受와 輸出實績과의 相關性

輸出保險引受와 相關한 輸出實績은 輸出保險支援에 의하여 輸出이 발생된 效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輸出保險引受와 相關한 輸出實績을 最終需要로 볼 때 < 표 - 4 >에서 보듯이 輸出保險引受와 相關한 輸出實績은 輕工業 및 重化學工業에 集中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輸出政策과 이를 支援하는 政策으로서의 輸出保險이 갖는 特性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의 産業發展에 따라 輸出振興政策을 펴고 있어서 輕工業 및 重化學工業에 집중하였으며 輸出保險 또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政策으로 一致하였기 때문이다.⁵³⁾

52) 韓國銀行, 1988年 産業關聯表(延長表), 1991, 15~36面 參照 : 生産技術構造가 不變이라는 假定下에 韓國銀行의 1988年 産業關聯表를 輸出保險公社에서 再分類作成, 分類한 分析表를 活用하였음.

53) 韓國輸出保險公社, 中·長期運營計劃(1993~1997年), 233面 參照.

〈表 - 4〉 輸出保險引受와 關聯한 輸出實績 (業種別 最終需要)
(單位: 百萬元)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 농림수산업	0	0	0	0	0
2. 광업	0	0	0	0	0
3. 경공업	17,581	104,198	361,354	323,305	401,200
4. 중화학공업	196,456	244,550	1,367,905	1,310,318	1,439,610
5. 전력·가스·수도건설업	0	0	0	0	0
6. 서비스·기타	0	0	0	0	0
계	214,037	348,748	1,729,259	1,633,623	1,840,810

註: 正常價格基準.

資料: 韓國輸出保險公社, 中·長期運營計劃(1993~1997年), 1993, 234面.

2. 輸出保險支援과 關聯한 國內生産誘發效果

輸出保險支援에 따른 産業別 生産誘發效果는 1989년에 6,872억원으로 최고이었다. 그러나 經濟沈滯와 더불어 1992년에는 3,598억원으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生産誘發效果는 輸出保險引受實績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製造業, 즉 輕工業과 重化學工業에 절대적 비중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분야에 輸出支援이 집중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表 - 5〉 輸出保險支援에 의한 産業別 國內生産誘發效果
(單位: 百萬元)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 농림수산업	7,139	30,571	112,652	101,894	124,065
2. 광업	4,357	5,821	31,489	30,054	33,241
3. 경공업	35,359	154,882	568,027	513,355	625,958
4. 중화학공업	310,333	407,496	2,222,334	2,122,897	2,344,209
5. 전력·가스·수도건설업	9,627	15,267	76,562	72,428	81,409
6. 서비스·기타	46,031	73,120	366,431	346,615	389,656
계	412,846	687,157	3,377,495	3,187,243	3,598,538

資料: 韓國輸出保險公社, 中·長期運營計劃(1993~1997年), 1993, 236面.

그리고 輸出保險의 生産誘發度側面을 보면 < 表 - 6 >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각 1988년에 1.93배, 그리고 1989년에 1.97배, 이후 1990년부터 1992년까지는 1.95배로 높은 生産誘發度を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數値는 1988年 産業聯關表上의 國內全産業의 平均生産誘發도가 1.735배인 점을 감안할 때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生産誘發效果가 製造業에 집중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輸出保險支援이 國內産業의 生産増大에 효율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表 - 6 > 輸出保險支援에 의한 生産誘發度 (單位: 百萬元)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수출보험 인수관련 수출실적 (A)	214,037	348,748	1,729,259	1,633,623	1,840,810
생산유발액 합계(B)	412,846	687,157	3,337,495	3,187,243	3,598,538
생산유발도(B/A, 배)	1.93	1.97	1.95	1.95	1.95

資料: 韓國輸出保險公社, 中·長期運營計劃(1993~1997年), 1993, 237面.

3. 輸出保險의 附加價值誘發效果

附加價值란 最終需要의 발생에 의하여 유발된 生産活動을 위하여 本源的 生産要素를 구입하고 그 對價를 지급함으로써 창출된 價值이다. 産業聯關分析上 그 구성 항목은 被用者 報酬, 營業剩餘, 固定資本消耗 및 純間接稅(間接稅-補助金)로 한정한다. 이에 의해 輸出保險支援에 의하여 창출된 附加價值額을 각 년도의 定常價格基準으로 살펴 보면 다음 < 표 - 7 >과 같다.

< 表 - 7 > 輸出保險支援에 의한 産業別 附加價值誘發額 (單位: 百萬元)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 농 림 수 산 업	4,902	20,993	77,359	69,971	85,196
2. 광 공 업	2,876	3,843	20,788	19,840	21,944
3. 경 공 업	9,183	40,225	147,524	133,325	162,570
4. 중 화 학 공 업	86,249	113,253	617,639	590,003	651,511
5. 전 력 가 스 수 도 건 설 업	4,396	6,972	34,964	33,076	37,177
6. 서 비 스 · 기 타	28,725	45,630	228,669	216,303	243,163
열 합 계	136,331	230,916	1,126,943	1,062,518	1,201,561

資料: 韓國輸出保險公社, 中·長期經營計劃(1993~1997年), 1993, 239面.

附加價值額은 1988년에 1조 3,631억원이던 것이 1989년에는 2조 3,091억원, 1990년에는 1조 1,264억원, 1991년에는 1조 625억원에 도달했으며 각 部門別로 볼 때는 製造業에 대한 誘發額의 비중이 1조 2,015억원을 유발시켜 각 부문마다 약간씩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附加價值誘發效果를 附加價值誘發度側面에서 살펴 보면 < 표 - 8 >과 같이 각각 1988년에 0.637배, 그리고 1989년에 0.662배, 이후 1990년에 0.652배, 그리고 1991년에 0.650배에 이르러 작년 1992년에는 0.653배로 나타나고 있다.

< 表 - 8 > 輸出保險支援에 대한 附加價值誘發度 (單位: 百萬元)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수출보험 인수관련 수출 실적 (A)	214,037	348,748	1,729,259	1,633,623	1,840,810
부가가치유발액합계(B)	136,331	230,916	1,126,943	1,062,518	1,201,561
부가가치유발도(B/A, 배)	0.637	0.662	0.652	0.650	0.653

資料: 韓國輸出保險公社, 中·長期經營計劃(1993~1997年), 1993, 240面.

4. 輸出保險의 勞動誘發效果

勞動誘發效果란 最終需要의 발생에 의하여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발된 生産活動過程에서 本源的 生産要素인 勞動을 투입시킴으로써 유발되는 直·間接勞動誘發量이다. 이는 雇傭誘發效果와 就業誘發效果로 나눌 수 있다. 前者는 有給雇傭者(被傭者)만의 雇傭效果를 나타내는 狹義의 勞動誘發效果를 말하고, 後者는 自營業主와 無給家族 從事者까지를 포함하는 廣義의 勞動誘發效果를 의미한다.⁵⁴⁾

輸出保險支援에 의한 雇傭誘發人員은 < 表 - 9 >와 같이 1988년에 1만 1천명, 1989년에 2만명, 1990년에 9만 9천명, 1991년에 9만 4천명, 1992년에 10만 6천명이다. 雇傭誘發人員은 製造業 및 서비스分野에 집중되어 있다.

< 表 - 9 > 輸出保險支援에 의한 雇傭誘發人員 및 比率 (單位: 名, %)

구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 농업	171	1.5	733	3.5	2,700	2.7	2,442	2.6	2,973	2.8
2. 수산업	349	3.0	466	2.2	2,521	2.5	2,406	2.6	2,661	2.5
3. 광업	1,375	72.3	6,024	73.6	22,092	73.0	19,965	72.9	24,345	73.1
4. 제조업	7,064		9,275		50,584		48,321		53,358	
5. 화학공업	343	2.9	544	2.6	2,727	2.8	2,580	2.8	2,900	2.7
6. 전력·가스·수도·건설	2,372	20.3	3,768	18.1	18,885	19.0	17,864	19.1	20,082	18.7
7. 서비스기타										
합계	11,674	100.0	20,810	100.0	99,509	100.0	93,578	100.0	106,319	100.0

資料: 韓國輸出保險公社, 中·長期經營計劃(1993~1997年), 1993, 241~242面.

54) 上掲書, 240面.

輸出保險支援에 의한 雇傭誘發比率을 産業別로 보면 < 表 - 9 >와 같이 輕工業과 重化學工業에서 1988년에 72.3%, 1989년에 73.6%, 1990년에 73.0%, 1991년에 72.9%, 1992년에 73.1%에 이르고 있다. 이는 輸出保險支援이 製造業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輸出保險支援에 의한 就業誘發人員은 < 表 - 10 >에서와 같이 1988년에 1만 4천명, 1989년에 2만 9천명, 1990년에 13만 1천명, 1991년에 12만 3천명, 1992년에 14만 1천명이다.

< 表 - 10 > 就業誘發人員 및 比率

(單位: 名)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 농림수산업	1,327	9.2	5,681	19.9	20,935	15.9	18,035	15.4	23,056	16.4
2. 광업	356	2.4	476	1.7	2,576	2.0	2,458	2.0	2,719	1.9
3. 경공업	1,459	59.7	6,390	55.4	23,435	57.0	21,179	57.2	25,825	56.9
4. 중화학공업	7,183		9,433		51,442		49,140		54,263	
5. 전력가스수도건설	358	2.5	567	2.0	2,844	2.0	2,691	2.2	3,024	2.1
6. 서비스기타	3,783	26.2	6,009	21.0	30,111	23.1	28,483	23.2	32,020	22.7
합 계	14,466	100	28,556	100	131,343	100	122,886	100	140,907	100

資料: 韓國輸出保險公社, 中·長期經營計劃(1993~1997年), 1993, 242~243面.
 주: ()는 수입대체 효과가 음인것을 표시함

輸出保險支援에 의한 就業誘發比率을 < 表 - 10 >에서 보면 輕工業과 重化學工業 部門에서 1988년에 59.7%, 1989년에 55.4%, 1990년에 57.0%, 1991년에 57.2%, 1992년에 56.9%를 달성하고 있다.

5. 輸出保險의 輸入代替效果

輸出保險支援에 의한 輸入代替效果는 鑛業製品과 重化學工業製品 등에서 1988년에 57억원, 1989년에 82억원, 1990년에 429억원, 1991년에 407억원, 1992년에 454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資本財 및 原副資財에 대한 輸入代替效果는 輸出支援을 위한 間接輸出振興政策으로서의 역할을 잘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表 - 11 〉 輸出保險支援에 의한 輸入代替效果

(單位: 百萬元)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 농림수산업	(74)	(57)	(414)	(407)	(427)
2. 광업	5,123	6,760	36,781	35,127	38,807
3. 경공업	(46)	(33)	(251)	(248)	(258)
4. 중화학공업	746	1,629	7,228	6,730	7,785
5. 전력가스수도건설	0	0	1	1	1
6. 서비스·기타	(73)	(80)	(479)	(462)	(502)
합 계	5,676	8,219	42,866	40,741	45,406

資料: 韓國輸出保險公社, 中·長期經營計劃(1993~1997年), 1993, 246面.

6. 輸出保險種目の 産業聯關性⁵⁵⁾

주요 輸出保險種目の 生産誘發度는 輸出어음保險의 경우는 1.959倍, 中·長期延拂輸出保險은 1.913倍, 一般輸出保險은 1.933倍로 전체는 總 1.953倍로 나타나고 있다. 附加價值誘發度는 輸出어음保險이 0.655倍, 中·長期延拂輸出保險은

55) 韓國輸出保險公社에서 作成, 分析한 資料를 근거로 하였음.

0.627倍, 一般輸出保險이 0.639倍로 전체는 0.652倍로 나타나고 있다. 雇傭誘發度는 輸出어음保險이 0.058倍, 中·長期延拂輸出保險이 0.053倍, 一般輸出保險은 0.055倍로 전체는 0.058倍로 나타나고 있다. 就業誘發度에서는 輸出어음保險이 0.078倍, 中·長期延拂輸出保險이 0.062倍, 一般輸出保險이 0.069倍이며 전체는 0.076倍를 보이고 있다.

결국 輸出어음保險과 一般輸出保險이 中·長期延拂輸出保險에 비하여 각 分野別 寄與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一般輸出保險의 生産誘發效果는 모든 分野에서 평균치보다 높은 效果를 보였다. 이것은 輸出어음保險과 一般輸出保險이 中·長期延拂輸出保險에 비하여 輸出保險支援에 의해 全産業에 미치는 生産 波及 附加價值雇傭誘發 波及效果가 크기 때문이다.⁵⁶⁾

56) 韓國輸出保險公社, 中·長期經營計劃(1993~1997年), 243面.

〈 表 - 12 〉 主要輸出保險種目的 産業聯關分析 (1988 ~ 1992年 期間中 累計)
(單位: 百萬元)

구 분	수출어음보험	중장기 연불수출보험	일반수출보험	합 계
수출보험 인수관련 수출실적 (A)	4,956,857	630,368	179,252	5,766,477
생산유발액합계(B)	9,710,873	1,205,963	346,441	11,263,277
생산유발도(B/A)	1.959	1.913	1.933	1.953
부가가치유발액합계(C)	3,248,176	395,498	114,594	3,758,269
부가가치유발도(C/A)	0.655	0.627	0.639	0.652
고용유발인원(D)	288,871	33,156	9,862	331,889
고용유발도(D/A)	0.058	0.053	0.055	0.058
취업유발인원(E)	386,620	39,186	12,353	438,158
취업유발도(E/A)	0.078	0.062	0.069	0.076

資料: 韓國輸出保險公社, 中·長期經營計劃(1993~1997年), 1993, 247面.

輸出保險種目的 産業聯關分析을 토대로 輸出保險에 의해 한 産業이 다른 産業으로 부터 받는 波及效果와 한 産業이 他産業에 미치는 波及效果를 살펴 볼 수 있다.

前者의 前後方關聯效果는 産業聯關表의 生産誘發係數行列에서 도출한 感應度係數와 影響力係數라는 指標로서 각각 파악할 수 있다.⁵⁷⁾ 感應度係數란 각 産業에 평균적으로 1單位의 最終需要가 주어졌을 때 각 부문이 받는 효과인 感應度の 상대적 크기이다. 이는 全産業의 最終需要에 대한 특정 産業의 前方關聯效果를 나타낸다. 影響力係數는 어떤 産業에 1單位의 最終需要가 주어졌을 때 他部門에 미치는 影響力の 상대적 크기이다. 이는 特定産業의 最終需要가 他産業에 미치는 後方關聯效果를 나타낸다.⁵⁸⁾ < 表 - 13 >에서 보면, 製造業과 서비스업이 影響力係數보다 感應度係數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두 분야가 他分野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그 중 重化學工業의 係數가 아주 높다.

57) 輸出保險公社에서 제시한 數式은

$$\begin{aligned} \text{感應度係數} &= \frac{\sum_j r_{ij}}{1 - \sum_i \sum_j r_{ij}} = \frac{\text{어떤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행계}}{\text{전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행계의 평균치}} \\ \text{影響力係數} &= \frac{\sum_i r_{ij}}{1 - \sum_i \sum_j r_{ij}} = \frac{\text{어떤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열계}}{\text{전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열계의 평균치}} \end{aligned}$$

단, r_{ji} : 生産誘發係數의 각 要素, n : 産業部門의 數이다.

58) 韓國輸出保險公社, 中·長期經營計劃(1993~1997年), 248~249面.

〈 表 - 13 〉 産業別 影響力係數와 感應度係數

구 분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농 립 어 업	0.82	0.72
광 업	0.86	0.57
제 조 업 (경 공 업) (중 화 학 공 업)	1.33 (1.29) (1.38)	2.04 (1.36) (2.89)
전 력 가 스 수 도 건 설	1.11	0.61
서 어 비 스 업	0.88	1.07
전 산 업 평 균	1.00	1.00

資料: 韓國銀行, 1988年 産業聯關表, 36面; 韓國輸出保險公社, 中·長期經營計劃(1993~1997年), 1993, 249面에서 再引用.

第 5 節 輸出保險運營의 負的 經濟波及效果⁵⁹⁾

1. 輸出保險引受의 限界露出

수출보험인수와 수출실적과의 負的 경제파급효과를 〈 表 - 4 〉에서 보면 輸出保險引受와 관련한 輸出實績 모두가 1988年 이후 1992년까지 輕工業 및 重化學工業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全無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은 輸出保險引受와 관련하여 農林水産業 및 鑛業 등에는 輸出支授이 약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59) 주 52)와 동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輸出保險種目이 4개 종목이나 실제로 운영된 것은 中・長期延拂輸出保險과 一般輸出保險, 輸出어음保險 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3개 종목에서도 中・長期延拂輸出保險에 대한 依存度가 높다. 그것은 他産業에 미치는 經濟的 效果가 重化學工業에 치중되어 이를 지원하는 中・長期延拂輸出保險 에 대한 依存度가 높았기 때문이다.

2. 輸出保險支援의 偏重深化

輸出保險支援과 관련된 國內生産誘發效果의 負的 經濟波及效果를 < 表 - 5 > 와 < 表 - 6 >에서 보면 輸出保險支援에 따른 産業別 生産誘發效果에 있어서도 製造業, 輕工業 및 重化學工業에 치중되어 있다. 즉 輸出支援政策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輸出保險이 製造業에 치중하여 農林水産業을 비롯한 나머지 부문에서의 生産誘發效果는 차츰 개선되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다.

生産誘發度에 있어서도 輸出支援이 製造業에 치중되어 있어 1989年 生産誘發度 指數 1.97을 최고로 1990年 이후 1992년까지 1.95를 유지하고 있다. 즉 停滯態라는 것이다.

이와같이 輸出保險支援에 의한 生産誘發度가 否定的 效果를 볼때 農林水産業이나 그밖의 部門에서 미미한 效果를 보이고 있는 것을 輸出保險인수종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輸出保險의 認識缺如와 運營技術沈滯

輸出保險의 附加價值誘發效果와 관련한 負的 經濟波及 效果를 < 表 - 7 >과 < 表 - 8 >에서 보면 輸出保險支援에 의해 창출된 附加價值誘發度에 있어서도 製造業 및 서비스업에 치중되어 있다.

1992년에 이들이 차지하는 액수가 1조 5백억원으로 1992年 총액 1조 2천억원 의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부문은 1천 5백억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效果가 附加價值誘發度에 반영되어 1992년의 경우 附加價值誘發度가 0.653배이다. 그러나 이것은 國內 全産業의 平均附加價值誘發度の 0.74배보다 낮은 수준이다.

附加價值誘發度가 이처럼 낮은 理由로는 첫째, 輸出保險支援이 中間投入係數가 상대적으로 높은 製造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둘째, 附加價值誘發效果가 높은 農林漁業 등의 原始産業과 都小賣業을 비롯한 서비스産業에는 支援實績이 미미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⁶⁰⁾

결국 이는 輸出保險액수에 있어서나 인수종목의 부족 및 인식도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輸出保險인수 종목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弘報活動의 増大가 필요하다.

輸出保險의 勞動誘發效果와 관련한 負的 經濟波及效果를 < 表 - 9 >와 < 表 - 10 >에서 보면 輸出保險의 雇傭誘發效果에서 製造業 및 서비스分野의 誘發效果가 매우 커서 1988年 이후 1992년까지 90%을 유지하였다. 반면 나머지 분야는 2%에 불과하여 그 비율은 미미한 실정이다.

就業誘發比率에서도 雇傭誘發效果에서와 같이 製造業과 서비스分野에서 크게

60) 上掲書, 239面

신장된 반면 나머지 분야는 미미하다. 또한 雇傭誘發效果에 있어서는 全體産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輕工業과 重化學工業의 특성상 自營業主와 無給家族 從事者가 적다는 점과 3D 현상으로 인해 危險業種에 대한 기피 현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鑛業部門과 電力·가스·水道·建設業에서는 더욱 낮은 誘發效果를 보이고 있다.

결국 輸出保險에 대한 弘報 부족과 가구 및 액수가 적어서 지원이 미미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輸出保險의 輸入대체효과와 관련한 負的經濟波及效果를 <表-11>에서 보면 農林水産物과 輕工業 및 서비스分野에서는 負의 效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U.R현상을 통하여 농·수산물 및 畜産물의 輸入開放과 流通業 및 學院開放 등 서비스 分野의 開放 壓力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輸出保險은 輸出保險의 活用増大를 위한 홍보 대책이 필요하며 농·수산물 보상화를 위한 활용의 증대 및 중소기업등에서 輸出保險의 活用이 필요하다.

끝으로 輸出保險種目の 産業연관성과 관련한 負的 經濟波及效果를 살펴보면 현재 韓國에서는 一部保險種目に 편중되어 輸出保險制度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에서도 一般輸出保險이 輸出어음保險이나 中長期延拂輸出保險에 비해 生産誘發度, 附加價值誘發度, 雇傭誘發度, 就業誘發度 등에서 높은 효과를 보이는 등 輸出保險에 편중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表-13>에서 보면 農林漁業, 鑛業, 서비스業 등 非製造部門은 全産業의 平均數値보다 미치지 못하였다. 즉 이러한 사실은 輸出保險이 전부 製造業 중심으로 편중되게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産業聯關波及效果의 計量的 數値를 보면 輸出保險支授이 國民經濟에 效率的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輸出保險이 갖는 원

래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해서는 輸出保險制度의 運營上의 問題點을 찾아내 개선
을 함으로써 國家經濟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第 3 章 韓國의 輸出保險制度

運營現況과 問題點

第 1 節 輸出保險基金의 造成과 擔保力

1. 政府支援中心의 基金造成

輸出保險基金은 輸出保險事業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政府가 豫算에 의하여 조성하도록 한 財源으로⁶¹⁾ 輸出保險의 擔保能力을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 또한 輸出保險基金은 保險事業의 運營財源이며 運營體制에 대한 信賴度를 나타낸다.⁶²⁾

輸出保險基金은 1978년까지 出捐金과 基金會計의 決算上 발생한 利益金의 轉入으로 구성되어 왔다. 1973년부터는 輸出保險法을 개정하여 輸出保險基金의 決算上 발생한 利益金을 財團에 轉入하지 않고 別途의 計定에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輸出保險基金은 政府의 出捐金만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⁶³⁾

政府는 輸出保險業務의 開始年度인 1969년에는 3억원의 輸出保險基金을 출연

61) 輸出保險法 第7章 參照; 金泥良雄 編, 新貿易關係法, 日本評論社, 542面;
趙相元, 前掲書, 2362面 參照.

62) 石田貞夫, 中村那論, 新貿易取引, 有斐閣, 1992, 196面 參照.

63) 輸出保險法 第31條 參照.

하였다. 이후 매년 輸出保險基金을 增額出捐하여 왔다. 특히, 1969年の 업무개시 이래 처음으로 輸出保險基金을 韓國貿易協會로부터 출연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政府의 적극적인 財政政策에 힘입어 輸出保險基金은 1993年 5月 현재 650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는 有效契約額 1조 7,869억원의 1/33에 불과한 실정으로 擔保力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

〈 表 - 14 〉 輸出保險基金 保有現況

(單位: 百萬元)

구분	수 출 보 험 기 금					
연도	정부출연	기타출연	이익전입액	누 계	이 익 적 립 액	총 계
1969	300	-	-	300	-	-
1970	200	-	33	533	-	-
1971	-	-	71	604	-	-
1972	-	-	130	734	-	-
1973	-	-	254	988	-	-
1974	-	-	6	994	-	-
1975	-	-	194	1,188	-	-
1976	1,000	-	101	2,289	-	-
1977	2,000	-	△361	3,928	-	-
1978	3,000	-	212	7,140	-	-
1979	2,500	-	-	9,640	767(767)	10,407
1980	3,000	-	-	12,640	2,226(2,993)	15,632
1981	5,000	-	-	17,640	2,728(5,721)	23,361
1982	950	-	-	18,590	6,947(12,668)	31,258
1983	1,000	-	-	19,590	2,115(14,783)	34,373
1984	-	-	-	19,590	2,093(16,876)	36,466
1985	1,000	-	-	20,590	1,925(18,801)	39,391
1986	1,000	-	-	21,590	1,921(20,722)	42,312
1987	1,000	-	-	22,590	1,327(22,049)	44,639
1988	2,000	-	-	24,590	2,148(24,197)	48,787
1989	2,000	-	-	26,590	△24,197(-)	26,590
1990	2,000	-	-	28,590	- (-)	28,590
1991	20,000	5,000	-	53,590	- (-)	53,590
1992	-	-	-	-	- (-)	53,590
1993.5	11,400	-	-	65,000	- (-)	65,000

資料: 韓國輸出保險公社, 輸出保險 第3號, 1992, 118面; 韓國輸出保險公社, 21世紀를 향한 輸出保險의 役割, 1993, 36面 參照.

2. 輸出保險基金의 零細性和 擔保力

1993年 5月 현재 構成되어 있는 650억원의 輸出保險基金은 構成액의 96.3%가 政府가 출연한 것으로 政府의 부담이 매우 과중한 상태이다. 이러한 運用基金造成의 政府中心體制는 保險運營者의 자세를 극히 보수적인 것으로 만드는 한편, 輸出保險全般의 積極적 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다.⁶⁴⁾ 더욱이 輸出保險基金 造成額이 政府에 거의 의존함으로써 輸出保險基金運營에도 硬直性을 초래하고 있다. 즉, 世界貿易環境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新市場開拓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輸出業體를 積極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輸出保險基金의 零細性은 擔保力の 취약을 초래하여 輸出保險事業에 따른 公債力維持에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輸出保險基金이 零細한 原因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中·長期延拂輸出保險 및 輸出어음保險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서의 引受實績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둘째, 최근 2,3年間 U.S Lines의 破産과 이라크戰爭의 勃發 등 大型輸出保險事故로 인하여 損害率이 급증하여 輸出保險自體의 운영을 통한 基金蓄積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셋째, 實際保險을 이용하는 企業도 大企業에 편중하여 基金造成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64) 韓國輸出保險公社, 輸出保險 第4號, 1992, 30面.

〈 表 - 15 〉 韓國과 外國 輸出保險機關과의 擔保力 比較
(單位: 百萬달러)

구 분	이태리	캐나다	벨기에	싱가포르	한국
보유 기금(A)	2,963	603	336	67	81
유효계약액(B)	28,952	2,359	5,542	150	2,481
책임배수(B/A)	10	4	16	2	31

註: 韓國은 93年 5月末 基準이고, 其他國家는 89年末 基準임.
資料: 韓國輸出保險公社, 21世紀를 향한 輸出保險의 役割, 1993, 13面.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輸出保險基金을 근거로 保有基金 對有效契約額의 責任倍數를 外國輸出保險機關과 비교하여 보면, 벨기에는 16배, 이태리는 10배, 캐나다, 싱가포르는 각각 4배, 2배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려 31배 수준으로 輸出保險의 擔保력이 크게 취약한 상태인 것이다. 즉, 保有基金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정도가 우리나라가 제일 큰 것이다.

第 2 節 輸出增加에 따른 輸出保險의 活用性

1. 輸出增加와 輸出保險 活用率

輸出保險活用率이란 輸出保險引受額이 總輸出額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輸出保險의 輸出振興效果를 반영하는 중요한 指標다.⁶⁵⁾

현재 시행되고 있는 9個 輸出保險을 토대로 商品輸出에 따른 輸出保險活用率(C/A)을 보면 1985년에 4.5%를 기록한 이래 增減이 계속되다가 1991년에 2.69%,

65) 韓國輸出保險公社, 輸出保險 第3號, 114面.

1992年 9月 현재 2.76%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볼 때 商品輸出額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商品輸出과 관련한 輸出保險의 活用率은 매우 저조한 동시에 不安定 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表 - 16 > 參照.

이러한 原因으로는 첫째, 1985年 이래 對内外景氣가 침체했다는 점 둘째, 海外建設輸出이 激減했다는 점 셋째, 船舶에 대한 包括保險猶豫措置가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輸出어음保險 包括保險制度가 개선됨으로써 短期輸出去來의 輸出保險 附保率이 3% 수준으로 회복하는 추세에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다.

< 表 - 16 > 輸出保險活用率 推移 (1983~1992年) (單位: 億 달러, %)

분 년도	수 출 액			보 험 인 수 액 (억원)			활 용 율	
	상 품 수출 액(A)	건설 수출 액	합 계 (B)	상품 수출 관련인수액 (C)	건설및 해 외투자관 련 인수액	합 계 (D)	총수출 활용율 (D/B)	상품수출 활용율 (C/A)
1983	244.5	104.4	348.9	7.6	4.7	12.3	3.53	3.11
1984	292.5	65.0	357.5	6,017.4	3,780.4	9,798.1	4.24	3.20
1985	302.8	46.9	349.7	9.4	5.8	15.1	4.30	4.45
1986	347.2	22.4	369.6	7,754.9	4,773.0	12,527.9	4.30	4.45
1987	472.8	17.1	489.9	13.5	1.5	15.0	3.31	3.00
1988	607.0	16.0	623.0	11,998.5	1,377.9	13,376.5	1.11	0.75
1989	623.8	24.1	647.9	10.4	1.8	12.2	0.47	0.39
1990	650.2	67.7	717.9	8,963.0	1,565.5	10,528.5	0.84	0.74
1991	718.7	30.4	749.1	3.5	1.9	5.4	3.29	3.29
1992	296.6	10.3	306.9	287.9	1,502.6	4,310.5	2.74	2.69
				2.34	0.61	2.95	3.03	2.76
				1,603.6	415.2	2,018.8		
				4.59	0.87	5.46		
				3,116.7	593.4	3,710.1		
				21.4	2.2	23.6		
				15,329.8	1,558.2	16,888.0		
				19.3	1.2	20.5		
				14,146.1	930.7	15,076.8		
				8.2	1.1	9.3		
				6,378.7	838.8	7,262.5		

資料: 韓國輸出保險公社, 輸出保險 第2號, 1993, 137面.

그러나 輸出保險은 商品輸出關聯保險으로 부터 출발한 것이 世界輸出保險의 歷史이며, 그 동안 輸出保險의 안정적 운영에 성공한 先進國들의 경우 商品輸出과 직결된 輸出保險種目들의 활용이 輸出保險全體의 中心이 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商品輸出關聯保險活用이 저조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은 危險의 效果的 分散이나 大型事故의 防止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첫째, 商品輸出關聯保險이 非商品輸出關聯保險에 비하여 附保地域 多樣化 둘째, 件當規模의 多樣化 셋째, 附保對象品目の 多樣化를 기하지 못하여 輸出保險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代金決濟期間 또한 상대적으로 短期的이 되어 有效契約의 累増效果도 상대적으로 적게 되는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2. 大企業 中心의 輸出保險活用率

輸出保險 活用도를 볼 때 中小企業의 輸出保險利用은 매우 저조하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5個 종목중 中·長期延拂輸出保險과 輸出保證保險은 大企業 등에 의해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輸出어음保險의 경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鐵鋼, 機械類, 타이어 등 重工業製品의 附保에 있어서는 大企業들이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中小企業들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는 海外投資保險과 中·長期延拂輸出保險中 重化學製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中小企業의 몫으로 보았을 때

總引受実績에서 中小企業이 차지하는 比率은 20% 미만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66) < 表 - 17 参照 >.

< 表 - 17 > 企業規模別 輸出保險利用現況 (1987~1992年 9月)
(單位: %)

구 분	수출어음 보 험	해외투자 보 험	중장기연불 보 험	일반수출 보 험	계
대 기 업	91.0	33.3	100.0	60.0	90.8
중소기업	9.0	66.7	-	40.0	9.2

資料: 韓國輸出保險公社, 中·長期發展計劃(1993~1997年), 1993, 78面.

이러한 原因으로는 첫째, 大企業의 商社를 이용한 中小企業의 輸出이 代行되고 있다는 점 둘째, 中小企業의 輸出代金決濟方式이 주로 L/C 一覽拂條件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셋째, 현재 輸出保險法이 日本의 貿易保險制度를 거의 모방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保險運營에 관한 細部事項을 규정하여 輸出保險의 引受危險을 집중적으로 규제하는 결과로 輸出保險運營者가 國際貿易環境의 變化 및 決濟方式의 多樣化에 彈力的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7)

3. 輸出保險活用の 認識度 不足

우리나라의 輸出保險活用率을 外國과 비교할 때 開途國의 全體平均 3.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全世界의 平均値인 11%에도 미달하고 있다. 日本의 경우는 輸出保險活用率이 31.2%이고, 오스트리아는 23.2%이며, 英國이 21.1%,

66) 韓國輸出保險公社, 輸出保險 第4號, 30面.

67) 石田貞夫, 中村那論, 前掲書, 196~200面; 金泥良雄, 前掲書, 542~621面.

프랑스가 19.2%로 先進諸國들은 平均 12.2%를 上廻하고 있는 실정이다.

〈 表 - 18 〉 主要國의 輸出保險活用率 (1987~1991年)
(單位: US\$百萬, %)

국 가	보험인수액(A)	수출액 (B)	활용률 (A/B)
프 랑 스	35,740	185,851	19.2
영국	33,753	159,780	21.1
일본	85,528	274,468	31.2
독일	17,411	354,374	4.9
오스트리아	8,005	34,496	23.2
이태리	20,234	144,982	14.0

註: 先進國平均은 2.2%, 開途國平均은 3.8%, 全世界平均은 11.0%임.

資料: 韓國輸出保險公社, 中·長期運營計劃(1993~1997年), 1993, 71面.

그런데 우리나라의 輸出保險活用率이 先進諸國의 경우와 비교하여 극히 낮은 比率을 보이는 것은 國內輸出業者가 輸出保險의 근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큰 原因이 있다.⁶⁸⁾ 이러한 認識下에 危險한 去來만을 保險에 附保하기를 바라게 되고 保險者인 政府도 危險去來에 대한 輸出保險引受를 회피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그 밖의 原因으로 첫째, 우리나라의 輸出保險歷史가 先進諸國에 비하여 짧다는 점 둘째, 輸出市場 및 輸出商品構造面에서 갖는 차이가 있다는 점 셋째, 現行 輸出保險制度가 갖는 여러 가지 問題點이 있다는 점 넷째, 輸出保險運營의 기반이 되는 擔保力不足으로 인한 과감한 引受가 不可能하다는 점 다섯째, 長期間代行體制에 의한 소극적인 保險事業의 운영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⁶⁹⁾

68) 韓國輸出保險公社, 中·長期運營計劃(1993~1997年), 78面.

69) 韓國輸出保險公社, 輸出保險 第3號, 115面.

第 3 節 輸出保險 引受種目과 引受地域

1. 輸出保險 引受種目の 集中性

政府에서는 1980年代末부터 시작된 共產圈國家와의 貿易去來活性化와 함께 中東國家에 대한 消費財의 輸出增加 등에 따라 輸出어음保險 包括保險制度의 附保率을 引上하고 業體의 자격을 完화하는 등 制度改善을 통해 輸出保險의 引受에 힘을 기울여 1991년에는 引受件數가 21,203件, 引受金額이 1조 5,077억원에 이르게 되었다.⁷⁰⁾ 그리고 總引受實績이 1993年 5月 현재 103,259件에 額數는 15조 6,818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引受實績이 저조했던 原因을 살펴 보면 첫째, 1986年以後 1989年末까지 中·長期延拂輸出保險의 包括保險猶豫期間設定으로 인해 同保險의 附保實績減少로 引受實績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둘째, 中東國家의 油價下落에 따른 建設景氣退潮에 따른 海外建設公社와 관련된 輸出保證保險의 引受實績減少 셋째, 國內 輸出者의 安易한 輸出慣行 및 輸出金融縮小에 따른 無信用狀去來方式의 회피와 市場開拓의 저조 등에 따른 것으로 要約된다.

70) 上掲書, 115~116面 參照.

〈 表 - 19 〉 輸出保險種目別 有效契約

(單位: 件數, 圓, %)

구 분	1991년			1992년		
	건 수	금 액	구성비	건 수	금 액	구성비
일 반 수 출 보 험	40	12,760	0.7	43	117,739	6.6
수 출 어 음 보 험	-	-	-	-	400,669	-
수 출 대 금 수 출 보 험	5,589	315,867	17.4	5,403	848,897	22.4
중 장 기 연 불 수 출 보 험	209	1,114,523	61.3	165	35	47.5
수 출 대 금 수 출 보 험	1	74	-	1	-	-
위 탁 판 매 수 출 보 험	-	-	-	-	-	-
해 외 투 자 보 험	164	49,983	2.7	74	-	3.2
해 외 건 설 공 사 보 험	-	-	-	-	56,558	-
수 출 보 증 보 험	91	325,487	17.9	74	363,042	20.3
계	5,994	1,818,694	100.0	5,760	1,789,940	100.0

資料: 韓國輸出保險公社, 輸出保險, 1993, 第2號, 30面.

輸出保險種目別 有效契約額을 볼 때 최근 輸出保險의 인수 형태가 短期輸出去來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輸出保險 有效契約額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1992年末 현재 有效契約額이 1991年末에 비해 318억 원이 줄어든 1조 7,869 억원이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保險期間이 長期인 中·長期延拂 輸出契約額은 최근 감소 추세에 있지만 전체의 47.5%를 차지하였다. 또한 輸出 어음保險의 경우는 92年末 현재 22.4%를 차지하여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2. 輸出保險 引受地域의 偏重性

輸出保險의 地域別 有效契約額을 보면 92年末 현재 輸出어음保險, 中·長期延拂 輸出保險 중심인 아시아가 31.3%, 中·長期延拂 輸出保險 중심인 유럽이 29.2%, 輸出保證保險 중심인 中東이 20.35%를 나타내어 아시아, 유럽, 中東 3地域이 전

체의 80.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 表 - 20 〉 地域別 輸出保險有效契約

(單位: 億원, %)

구 분	1982	1985	1990	1992
아 시 아	1,941 (9.7)	7,270 (21.7)	4,754 (24.0)	5,595 (31.3)
중 동	16,007 (80.0)	11,602 (34.7)	5,182 (26.2)	3,633 (20.3)
유 럽	366 (1.8)	5,429 (16.2)	4,874 (24.7)	5,214 (29.2)
북 미	144 (0.7)	7,368 (22.0)	3,940 (19.9)	2,414 (13.5)
중 남 미	1,081 (5.4)	1,025 (3.1)	579 (2.9)	710 (4.0)
아 프 리 카	204 (1.0)	207 (0.6)	112 (0.6)	134 (0.7)
대 양 주	276 (1.4)	556 (1.7)	329 (1.7)	169 (1.0)
계	20,019	33,457	19,770	17,869

註: 1) 毎年度末 基準.

2) ()는 構成比.

資料: 韓國輸出保險公社, 中·長期運營計劃(1993~1997年), 1993, 45面.

최근 國際經濟環境의 변화에 따라 이란, 中國 등에서 大規模 産業設備發注가 이루어지는 등 輸出保險의 인수 지역도 다변화하는 추세에 있지만 危險分散이라는 측면에서 인수 지역의 집중화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第 4 節 輸出保險事故의 處理와 補償實績

1. 輸出保險 損害率의 增加

輸出保險이 처음 실시된 1969년부터 1989년까지 輸出保險金支給은 주로 輸入者의 破産, 支給遲滯 등과 같은 信用危險으로 短期輸出保險에서 이루어 졌으며, 輸出保險金支給額이 180億원에 이르는 등 損害率도 31%에 달하는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輸出保險의 補償實績을 볼 때 1990年の U.S Lines의 파산과 관련하여 中·長期延拂輸出保險에 의한 保險金 670억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 액수가 輸出保險基金運營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1991년에는 이라크戰爭 勃發에 따른 大型保險事故 補償으로 434億원이 지급되는 등 輸出保險料에 대비한 損害率이 741%에 이르러 輸出保險 導入以後 1991년까지 年平均損害率 197%를 훨씬 상회하였다.⁷¹⁾ 그리고 1992年度에는 405억원의 保險金이 지급되어 輸入保險料에 대비한 損害率이 655%에 이르렀다. 또한 1993年 5月 현재는 損害率이 236%에 이르고 있다 < 표 - 21 參照 >.

71) 上掲書, 117面 參照.

〈 表 - 21 〉 年度別 輸出保險 事故補償實績

(單位: 百萬圓, %)

구 분	69~89	90	91	92	93(5)	계
보험금(A)	18,053	66,989(1)	43,386(2)	40,461(3)	13,174	182,063
보험료(B)	55,081	4,389	5,852	6,179	7,179	78,680
손해율(A/B)	32.8	1,526.3	741.4	654.8	183.5	231.4

註: (1) U.S.Lines 保險金 65,775百萬圓.

(2) U.S.Lines 保險金 23,414百萬圓, 이라크 保險金 16,068百萬圓.

(3) 이라크 保險금 14,993百萬圓.

資料: 韓國輸出保險公社, 21世紀를 향한 輸出保險의 役割, 1993, 39面.

물론 우리 나라의 輸出保險損害率은 外國의 輸出保險損害率 수준에 아직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大型事故가 발생하고 危險地域에 대한 保險事故率이 증가하는 까닭에 輸出保險損害率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輸出保險損害率을 主要國의 輸出保險損害率과 비교하여 보면 이태리의 損害率이 826%로 가장 높고, 프랑스가 713%, 日本이 565%, 英國이 531%를 각각 기록하고 있어 外國의 平均損害率은 550% 수준에 이르고 있다 < 표 - 22 參照 >.

〈 表 - 22 〉 主要國의 輸出保險損害率 (1987~1991)

(單位: US\$百萬, %)

국 가	수입 보험료(A)	지급 보험금(B)	손 해 율(B/A)
프 랑 스	418	2,982	713.2
영 국	317	1,686	531.6
일 본	214	1,212	565.5
독 일	345	1,560	442.7
이 태 리	181	1,460	826.3

註: 先進國은 平均 546.0%, 開途國은 平均 165.5%, 全世界의 平均은 532.9%.

資料: 韓國輸出保險公社, 21世紀를 향한 輸出保險의 役割, 1993, 38面.

2. 輸出保險事故의 增加와 補償

事故類型別로 輸出保險補償實績을 보면 信用危險 및 非常危險에 의한 保險金 支給이 각각 50%를 차지하고 있고 支給金額基準으로 信用危險이 67%를 점유하고 있다 < 表 - 23 參照 >.

< 表 - 23 > 事故類型別 輸出保險補償實績 (1969~1992年)
(單位: 億원, %)

구 분	건 수	보험금 지급액
<신용위험> ○ 지급지체 ○ 지급불능 ○ 기타(1)	216(22.5)	135(8.0)
	128(13.4)	949(56.2)
	118(12.3)	47(2.8)
	462(48.2)	1,131(67.0)
<비상위험> ○ 전쟁(2) ○ 송금지연	397(41.5)	387(22.9)
	99(10.3)	171(10.1)
	496(51.8)	558(33.0)
계	958	1,689

註: (1) 引受, 支給拒絶, 遡及不能, 本支社破産.

(2) 이라크.

(3) ()는 構成比.

資料: 韓國輸出保險公社, 中長期 運營計劃(1993~1997年), 1993, 48面.

地域別 輸出保險補償實績에 있어서는 大型事故가 발생한 北美地域이 中·長期 延拂輸出保險으로 67.6%, 中東이 輸出어음保險으로 26%를 기록하였다.

이들 地域外에도 아시아가 4.15%, 유럽이 1.3%에 해당하는 輸出保險補償實績이 있다. 輸出保險補償實績은 주로 輸出어음保險과 中·長期延拂輸出保險에 집중되고 있는데 總補償件數 1,689件中에서 輸出어음保險은 578件을, 中·長期延拂輸

出保險은 1,088件을 나타내고 있다 < 表 - 24 參照>.

< 表 - 24 > 地域別 輸出保險補償實績 (1969~1992年)
(單位: 件數, %)

구 분	수출 어음 보 험	중장기 연불 수출보험	기타 종목 보 험	계
아 시 아	19 (3.3)	46 (4.2)	3 (13.0)	68 (4.1)
중 동	424 (73.4)	5 (0.5)	19 (82.6)	448 (26.5)
유 럽	21 (3.6)	-	1 (4.4)	22 (1.3)
북 미	105 (18.2)	1,027 (94.4)	-	1,132 (67.0)
기 타	9 (1.5)	10 (0.9)	-	19 (1.1)
계	578	1,088	23	1,689

註: ()는 構成比.

資料: 韓國輸出保險公社, 中·長期運營計劃(1993~1997年), 1993, 49面.

第 5 節 輸出保險 信用調查의 實態

1. 輸出保險 信用調查基準의 劃一性

輸出保險과 관련된 商社信用調查業務는 원활한 輸出保險引受業務의 수행과 輸出保險 事故豫防을 위하여 輸入者信用調查, 輸出者信用調查, 輸入國의 信用度를 分析, 評價하여 非常危險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해 오고 있다.⁷²⁾ 그 중에서도 輸入業者의 信用調查는 輸出保險引受와 관련하

72) 韓國輸出保險公社, 輸出保險 第2號, 1993, 38面.

여 매우 중요하다.

〈 表 - 25 〉 等級別 商社信用調査現況

(單位: 個社, %)

구 분 등급	국 내		국 외		계	
	상사수	구성비	상사수	구성비	상사수	구성비
A	146	8.1	1,054	3.2	1,200	3.5
B	457	26.3	1,968	6.0	2,443	7.1
C	455	25.2	3,851	11.8	4,306	12.5
D	317	17.6	4,810	14.7	5,127	14.9
G	75	4.1	8,859	27.1	8,934	26.0
R	269	14.9	5,288	16.2	5,557	16.5
기 타	64	3.8	6,784	21.0	6,848	19.9
계	1,801	100.0	32,614	100.0	34,415	100.0

資料: 韓國輸出保險公社, 輸出保險 第2號, 1993, 38面.

이러한 輸出保險信用調査業務는 商社信用調査와 國別信用調査業務로 나누어진다. 商社信用調査業務는 원활한 輸出保險引受業務의 수행과 輸出保險事故의 예방을 위하여 國內外商社에 대한 信用度を 調査, 分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992年末 현재 信用調査가 완료된 商社의 수는 國內商社가 1,801社인데 A等級이 146個社로 8.1%, B等級이 457個社로 26.3%, C等級이 455個社로 25.2%이며 나머지 D, G, R, 其他는 각각 317, 75, 269, 64個社이다 < 表 - 25 參照>. 그러나 이러한 信用調査의 관점들은 매우 경직된 기준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輸出保險海外輸入商社의 信用調査 경우를 大陸別로 살펴 보면 유럽이 10,134個社로 가장 많다. 그리고 美洲地域이 9,781個社이며, 아시아가 9,104個社로 이 지역에 信用調査가 집중되어 있다 < 表 - 26 參照>.

〈 表 - 26 〉 商社 信用調査現況

(單位: FILE數)

구 분		1981	1985	1990	1992
해외 수입 상사	아 시 아	1,776	3,494	7,138	9,104
	아프리카	543	1,280	2,223	2,648
	유 럽	1,590	2,848	8,085	10,131
	미 주	927	4,330	8,316	9,781
	대 양 주	36	389	734	950
계		9,857	12,341	26,496	32,614
국 내 상 사		576	935	1,454	1,801
계		10,433	13,276	27,950	34,415

註: ()는 構成比.

資料: 韓國輸出保險公社, 中·長期運營計劃(1993~1997年), 1993, 50面.

이러한 地域別 信用調査業務는 輸入國의 信用度를 分析, 評價하여 非常危險의 발생 可能性을 事前에 예측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海外商社에 대한 信用調査에 改革·開放化의 물결로 政勢가 급변하고 있는 CIS 및 東歐國國家 등 특수 지역에 대한 調査, 分析은 우리의 진출 경험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중요하다. 73)

2. 輸出保險 信用調査技術의 落後

우리나라의 輸出保險 信用調査業務는 信用評價技法의 기술이 낙후하여 등급 사정시 劃一的이므로, 일률적인 評價方法을 사용함으로 信用狀態의 객觀적인 평가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評價調査報告書에서의 자료 활용도 기존 자료에 의존하는 등 信用調査技術과 相關한 情報處理技術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

73) 上掲書, 38~39面.

이다.

이는 輸出保險信用調査業務가 輸出業者의 요구에 의하여 輸出業者에 대한 無料서비스라는 취지로 주로 수행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이 있다. 그리고 제휴된 海外調査機關의 수가 1992年 6月 현재로 37個에 불과하여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⁷⁴⁾ 지역적으로도 調査機關이 광범위하게 分散되어 있어 地域間에 輸出保險信用調査의 토대가 되는 去來相對方の 財務諸表나 去來處의 정보에 대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商社信用調査의 대부분이 FAX 등 書面에 의한 조사로서 데이터通信網을 통한 신속한 調査體系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信用情報資料가 종이, File로 되어 있어 資料의 保管 및 情報傳達體系가 非效率的이다. 더욱이 해당 기관의 자료에 대한 電算化不振으로 輸出保險引受擔當部署와 輸出業者에 대한 즉시 傳達體系가 전체적으로 미흡하다. 이에 따라 輸出業者도 거래의 개시 및 去來形態 判斷與否 등에 대한 意思決定을 신속하게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74) 韓國輸出保險公社, 中·長期運營計劃(1993~1997年), 51面 參照.

第 4 章 韓國의 輸出保險制度 改善方案

第 1 節 輸出保險 擔保力の 擴充과 政策遂行機關과 의 紐帶強化

1. 政府支援中心의 輸出保險基金造成 脫皮

우리나라는 貿易部門에 있어서 輸出規模의 증대와 輸出保險附保率의 제고로 인하여 輸出保險基金의 확대 조성이 필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 輸出保險基金의 확충을 통해 公信力の 증대를 꾀하고 운영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必須不可缺한 것이다. 현재의 輸出保險運用基金이 절대적으로 零細하다는 것은 輸出保險運營의 質的, 量的 改善擴大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輸出保險運用基金의 확대를 위한 財源의 확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法制定을 통해 政府中心의 基金造成에서 벗어나 民間次元의 移讓을 통해 輸出保險運用基金擴充을 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輸出保險基金이 확충되면 通商摩擦을 피하면서 輸出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先進國과의 通商摩擦深化와 EC統合이나 NAFTA結成 등 世界經濟의 블럭化 경향으로 輸出增大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中南美 및 特殊地域으로의 輸出市場多變化가 요구되는 실정에서는 新市場開拓에 따르는 企業危險을 輸出保險을 통하여 적극 인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擔保力이 취약한 中小企業에 대해서는 無擔保輸出金融의 조달 기회를 확충하여 國際貿易의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財源確保가 필요하다.

한편으로 輸出保險基金의 확충은 輸出保險事業의 公信力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政府는 이를 위하여 政府出捐要請의 폭을 넓히되 民間部門出捐機關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法規의 제정을 통해 有效契約額 對比 輸出保險基金倍數의 하락을 유도하여 운영상의 부담을 제거해야 한다.

결국 輸出保險運用基金의 확충을 통해 적극적으로 輸出保險을 활용하여 世界各國의 높은 保護貿易主義政策 등 어려운 輸出環境 속에서 輸出増大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2. 對內 政策遂行機關과의 紐帶強化⁷⁵⁾

輸出保險基金의 運營狀況, 그리고 輸出保險業務實績 및 懸案 등에 관해 對內 政策遂行機關에 수시로 보고 함으로써 外交 및 經濟協力次元에서 輸出保險의 연계를 도모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輸出保險懸案事項에 대하여 政府政策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韓國銀行과 관련한 수행 업무와 지속적으로 연계를 함으로써 金融關聯規程에의 輸出保險部門에 대한 반영을 통하여 輸出保險의 活用度를 제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貿易協會와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그리고 輸出組合 등과 業務協助約定을 체결하여 貿易 및 業界動向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定期刊行物 등 자료

75) 上掲書, 162~164面 參照.

를 相互交換함으로써 輸出保險基金의 확충에 일조를 바랄 수 있다.

第 2 節 輸出保險事故 補償規定의 整備

및 事後管理 強化

1. 約款 및 關聯規定의 整備

輸出保險의 補償業務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輸出保險約款 및 輸出保險關聯規程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輸出保險約款 및 關聯規程의 정비를 위하여는 事故補償基準의 합리적인 설정이 필요하다. 約束어음發行과 관련한 免責條項을 未附保件에 포함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信用狀方式去來는 取消不能條件外에 L/C 開設銀行의 支給確約이 있는 거래만을 담보토록 約款買入基準에 명시함으로써 企業危險과 信用危險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商品專賣時에 專賣差損이 현저한 경우, 保險者의 補償責任一部를 면제한 근거를 신설하여 輸出保險事故의 補償處理業務를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內容變更通知의 누락과 事故發生通知의 해례 등으로 업무가 지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違約金徵收條項을 추가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

2. 回收義務의 強化

거래 당사자인 輸出業者의 回收義務強化와 회수에 소요된 費用全額에 대한 全補根據를 마련함으로 回收率提高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輸出保險事故發生時 法的 對應을 쉽게 하기 위하여 標準契約書를 작성하여 이의 활용을 業體에 적극 권고해야 한다. 그리고 同契約書에 의한 去來推進時에는 인수 한도를 증액하여 책정하는 등 保險引受와 관련한 業務處理時 優待措置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回收關聯者 對 輸入業者協商時에는 협상에 대한 全決權을 부여하는 등 海外事務所에 대한 이용을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外國輸出保險機關으로 부터 輸入國에서의 債務處分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補償債券回收技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海外輸出保險有關機關과 연계하여 補償 및 回收技法에 대한 研修敎育強化, 補償事例集發刊, 그리고 事故類型別이나 輸入業者形態別로 補償統計를 분석함으로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第 3 節 輸出保險의 引受種目開發 및 引受方法 改善

1. 保險商品의 開發과 調整

國際經濟環境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危險에 대처하여 國內産業을 보호하고, 우리 經濟自體의 量的·質的 成長을 위해서는 새로운 輸出保險種目の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保險種目⁷⁶⁾으로 첫째, 求償貿易保險을 고려할 수 있다. 이것은 北方交流에 이용 가능한 決濟方式이다. 北方交易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까닭에 이들 國家와의 貿易去來에서 발생하는 輸出保險上の 危險을 취급하는 保險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輸出 Factoring保險을 고려할 수 있다. 輸出 Factoring에 있어서는 債券買入機關인 Factor가 債券買入에 따른 危險負擔을 안게 된다. 이에 따라 輸出業者도 危險負擔을 안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危險을 담보할 수 있는 保險으로 선택할 수 있다.⁷⁷⁾

셋째, Forfaiting保險을 고려할 수 있다. 이것은 資本財 등의 中·長期延拂 輸出에 따른 輸出者の 輸出債券을 金融機關(Forfaiting)이 非要求條件으로 割引하여 買入하는 경우 이에 따른 危險을 담보해 주는 保險이다.⁷⁸⁾

넷째, BOT(Build, Operate and Transper)保險을 고려할 수 있다. BOT方式去來는 受惠國政府의 직접적인 保證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투자한 자금의 회수는 工事完工後에 하는 까닭에 당해 시설이나 설비의 조업 또는 운영에 따른 危險으로부터 輸出業者의 危險을 담보하는 保險이다. 그 규모로 볼 때 輸出保險機關의 관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保險이다.⁷⁹⁾

다섯째, 海外廣告保險 및 博覽會保險을 고려할 수 있다. 輸入國의 非常危險이나 輸入者の 信用危險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保險契約者 즉, 國內企業의 豫測錯誤危險을 담보하는 保險이다.⁸⁰⁾

76) 韓國輸出保險公社, 輸出保險 第4號, 34~35面.

77) 金泥良雄, 前掲書, 541面, 583面 參照.

78) 上掲書, 539面, 604面 參照.

79) 上掲書, 604面 參照.

80) 上掲書, 600面 參照.

여섯째, 輸出信用保證制度를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의 하나인데, 이것은 輸出信用保證書를 保險者로부터 받아 金融機關에서 이를 담보로 輸出金融을 받을 경우 상대방 輸入者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 그 金融機關은 保險者로부터 무조건 損失補償을 받게 해주는 保險이다.⁸¹⁾

2. 包括引受方式의 擴大

包括引受方式은 附保額의 착실한 증가와 그에 따른 保險料率의 점진적인 引下를 위한 것이다. 危險의 分散과 輸入增大에 따른 引受限度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 保險種目的 확대 및 補償率의 引上과 함께 危險의 逆選擇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輸出保險制度는 더욱이 包括保險의 長點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包括保險을 輸出保證保險과 中·長期延拂輸出保險 및 輸出어음保險以外の 종목에까지 운영 범위를 확대시킬 것이 필요하다. 包括引受의 형태는 기존의 商品別, 市場別, 商社別의 유형에서 이들 형태의 적절한 결합으로의 방향으로 추진하여 우리의 輸出戰略에서나 輸出商品, 市場構造의 변화에 상응하는 保險引受方法의 새로운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⁸²⁾ 이 때 중요한 것은 輸出保險이 非營利政策保險이라는 측면에서 그 인수면에서 정책적이 強制性保險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代數의 原理가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81) 上掲書, 541面, 587面 參照.

82) 韓國輸出保險公社, 中·長期運營計劃(1993~1997年), 33面.

3. 中小企業의 利用率 提高

輸出保險에 대한 참여가 현재와 같은 大企業中心에서 탈피하여 對外活動面에서 資金力이나 情報力, 그리고 마케팅能力 등 여러 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中小企業部門의 參與率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는 각종 保險種目에서 中小企業에 대한 特別誘引策이 마련되어야 한다. 誘引策으로는 保險料의 引下, 補償率의 引上, 評價基準의 緩和, 保險金支給對象의 擴大, 附保率의 引下 및 保險料納入方法 등에서 差等化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中小企業育成을 위한 國內의 支援策들과의 효과적인 연계 활동을 통해 輸出保險이 餘他の 支援策들에 대한 적절한 補完手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는 輸出信用保證制를 도입하여 우선적으로 中小企業을 대상으로 輸出産業化를 지원하는 擔保力補完次元에서 운영하는 것도 한 方案이 될 수 있다.

4. 保險料率 體系의 持續的인 改編

輸出保險事業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外國과 같이 일정 기간에 걸쳐 收支相等의 原則⁸³⁾에 입각하여 保證料受入과 保證金支給間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⁸⁴⁾ 즉 輸出保險에 대한 需要의 價格彈力性이 증대되도록 料率體系가 정비됨과 동시에 현행 基本料率 및 각종 特別割引率이 보다 적절히 差等化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一般輸出保險, 委託販賣輸出保險, 海外投資保險의

83) 李時煥, 權 五 共著, 保險學概論, 新陽社, 1993, 103面.

84) 韓國輸出保險公社, 中·長期運營計劃(1993~1997年), 34面.

경우 保險期間의 長短에 따른 危險率의 차이를 料率에 반영시켜야 한다. 그리고 非常危險의 國別差等化를 좀 더 細分化할 필요가 있다. 또한 輸入業者의 信用危險의 차등화를 통해 保險料率의 차등화를 피하고 去來規模에 대하여는 할인을 하는 등 保險料를 차등할 필요도 있다.

5. 輸出保險의 國民經濟寄與度を 위한 積極活用

輸出保險이 國民經濟에 미친 영향은 肯定的 效果를 나타내었다. 즉 우리나라의 製造業中心의 産業構造에서 야기될 수 밖에 없었던 重化學工業 및 輕工業中心으로 輸出이 이루어졌고, 輸出保險은 이들 業種에 중점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輸出保險이 生産誘發效果, 附加價值誘發效果, 雇傭誘發效果, 就業誘發效果 등에서 긍정적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하였다.

반면, 輸出保險이 거의 製造業中心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農林漁業, 鑛業, 電力, 가스, 수도, 建設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였고 國民經濟寄與度 또한 낮았다. 그러므로 輸出保險이 國民經濟에 어떠한 經濟的 效果를 바라는가에 따라 支援優先種目이 결정되어야 한다. 동시에 輸出保險運營種目に 있어서도 國民經濟에 肯定的 效果를 얻기 위해서는 輸出保險의 운영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輸出保險이 製造業中心의 輸出支援政策에서 벗어나 國民經濟寄與度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던 附加價值誘發效果 및 就業誘發效果에서는 肯定的 效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第 4 節 輸出保險에 대한 弘報 및 對内外協力強化

1. 輸出保險에 대한 弘報活動의 強化와 專門家 陽性

輸出保險에 대한 對外弘報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顧客에 대한 서비스概念조차 아직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顧客管理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輸出保險制度에 대한 적극적인 弘報 및 마케팅活動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大衆媒體를 이용한 대량 홍보의 週期的인 실시와 함께 범사회적인 公益事業에 輸出保險公社가 적극 참여하여 大衆의 인식을 고취하고 輸出保險에 대한 對外 이미지를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輸出保險과 관련한 專門化教育을 강화하여 專門家を 양성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輸出保險과 관련한 각종 案内資料를 제작하여 각 專門教育機關이나 業者들에게 배포함으로써 目標指向的 마케팅戰略을 구축하여 輸出保險의 특성에 맞는 顧客서비스를 다양화하고 顧客管理業務를 체계화하여 고객의 要求事項을 收斂, 分析함으로써 質的인 개선을 꾀할 수 있다.⁸⁵⁾

2. 對内外 協力強化

輸出保險의 位相定立을 위해서는 對内外協力を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 나라는 plant受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가 大型

85) 上掲書, 152面.

化되고, 國際적으로 高金利現象이 팽배해 지고, 輸入國의 country risk問題와 國際적인 인플레이션 問題 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콘소시엄方式의 事業進出이 不可避하다.⁸⁶⁾ 그러므로 外國과의 共同保險擴大에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며, 再保險의 실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先進工業國에 비하여 plant輸出에서 國際競爭力이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資本協力, 技術提携, 經驗蓄積, 危險分散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國際콘소시엄形式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第3國 市場에 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plant 등 産業設備輸出의 증대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國際協力機構와의 協力強化가 필요하다.

第 5 節 輸出保險 信用調査業務의 專門性 提高

및 情報體系構築

1. 輸出保險 信用調査業務의 效率性 提高

우선 信用調査業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信用調査와 관련한 情報入手處를 다양화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輸出保險引受時나 輸出業體의 要求時에 적절한 良質의 信用情報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深度있는 調査를 위해서는 調査機關과 제휴를 확대해야 한다. 즉, 輸出保險信用調査의 경우 國內信

86) Williams, Alex O,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John Wiley & Sons, Inc., 1982, p.105 參照.

用調査機關과의 業務提携를 통해 情報의 공유화를 추진함으로써 信用調査業務가 객관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國內商社에 대한 信用調査의 경우 公信力있는 機關의 情報資料活用을 통해 調査期間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海外輸入商社의 경우에는 1段階로 信用調査機關의 調査報告書上 이미 등급이 부여되었다면 별도의 等級査定節次 없이 자동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또한 等級通報 없이 접수되는 信用情報에 한해서는 等級査定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專門信用調査機關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없는 輸入業者의 경우에는 海外事務所를 통한 現地調査를 통해 情報資料를 입수하여 信用調査를 하되 우리나라 기업의 海外現地法人에 대한 評價時에는 國內母企業의 등급을 준용하여야 한다.

輸出保險信用調査業務의 效率性提高를 위해서는 等級評價時 電算프로그램을 이용한 自動評價技法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信用調査機關 및 B.U 機關의 商社信用調査技法에 대한 調査研究를 통하여 信用分析技術 및 評價技法의 개발이 필요하다.⁸⁷⁾

2. 國家別 信用度 評價資料의 確保와 電算網 構築

國家別政勢에 관한 자료를 모집하여 분류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즉 外國의 研究所나 國家調査機關을 비롯하여 KOTRA 등 國內有關機關에 이르기까지 情報資料募集網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海外事務所를 통해 駐在國 輸出保險機關

87) 韓國輸出保險公社, 中·長期運營計劃(1993~1997年), 114~115面 參照.

의 國家別引受態도와 代金未回收現況, 그리고 특정 분야의 資料를 입수하여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資料活用に 있어서는 수집된 國家別로 조사된 자료를 체계 적으로 분류하여 輸出保險引受 및 輸出業體의 情報需要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國家別 信用度評價技法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國家別 評價報告書體系를 短期와 中長期로 구분하여 危險分析 및 豫測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商業市場性이나 國際金融市場의 動向調査 등을 통해 調査領域을 확대함으로써 輸出保險引受時나 輸出業體가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는 國家別 資料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國家別 信用度評價資料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電算網의 구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國內外情報資源의 內實化를 기하여야 保險引受의 정확성 제고와 不特定한多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國家電算網業務와 연계시켜 輸出保險引受關係書類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貿易自動化 서비스시스템과의 相互情報交換體系를 강구함으로써 輸出保險有關機關과의 情報交換體系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近距離通信網을 구축하여多數人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綜合情報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

第 5 章 結 論

國際貿易環境의 변화에 따라 先進國과의 貿易摩擦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輸出擴大와 經濟成長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政策手段은 輸出保險制度이다. 輸出保險이란 非營利政策保險으로 輸出去來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危險 가운데서 海上保險과 같은 通常의 保險으로는 구제될 수 없는 危險인 信用危險과 非常危險, 그리고 企業危險을 擔保해 준다.

우리 나라에 輸出保險制度가 도입된 것은 輸出主導形 經濟發展戰略이 본격화 되던 1969年이었다. 그 후 輸出保險法이 제정되면서 輸出保險制度는 急成長을 하여 왔다. 國內外的 經濟與件의 변화에 따라 輸出保險法은 5차례의 改正이 있었고, 輸出保險의 引受種目は 9個 種目으로 증가하였다.

輸出保險은 輸出振興政策手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國民經濟 및 輸出增大에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輸出保險은 歷史가 짧아 輸出保險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부족하고 輸出構造 또한 아직도 安全爲主의 L/C 去來가 主從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保險需要는 부진한 실정에 처해 있다. 輸出保險이 輸出保險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目標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輸出保險制度가 가지고 있는 運營上의 問題點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輸出保險 運營現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輸出保險基金의 造成規模와 擔保力을 볼 때 輸出保險基金의 규모가 零細하여 輸出保險擔保力이 취약하다는 점과 政府支援中心의 輸出保險基金造成으로

基金造成에 民間企業의 참여가 消極的이라는 점이다.

둘째, 輸出保險의 活用性을 볼 때 輸出은 매년 增加趨勢에 있으나 輸出保險 活用率은 後進性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 活用도 大企業中心으로 되어 있어 상당히 非效率的인 면이 있다. 그리고 輸出保險에 대한 認識度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셋째, 輸出保險의 引受種目과 引受地域을 보면 保險引受種目이 매우 單純化되어 있다. 또한, 輸出保險引受內容面에서는 일부 종목에 집중되어 있고, 輸出保險引受地域面에서는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넷째, 保險事故의 處理와 관계한 補償實績을 보면 輸出保險損害率이 外國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이는 輸出保險事故가 大型化되고 多發化하는데 따른 것이다. 補償實績을 볼 때도 保險事故率이 높아 輸出保險基金의 責任倍數가 높은 실정이다.

다섯째, 輸出保險信用調査의 상태를 보면 信用調査基準이 劃一化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信用調査地域도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信用調査技術 또한 落後되어 있다.

이와 같은 問題點을 改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方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輸出保險事業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輸出保險基金의 擔保力을 확충하고 對内外의 政策遂行機關과의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輸出保險事故補償業務를 효율화하기 위해 輸出保險에 대한 約款 및 關聯規程을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補償 및 回收技法의 개선을 통해 補償業務를 효율화함과 동시에 輸出保險業務의 事後管理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輸出保險商品의 引受種目を 개발하고 조정하며 包括引受方式을 확대하

여 中小企業의 利用率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保險料率體系의 지속적인 개편을 통하여 輸出保險의 引受對象과 引受地域을 확대시켜야 한다.

넷째, 輸出保險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輸出保險에 대한 弘報活動을 활성화하고 對外的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輸出保險專門家を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輸出保險信用調査業務의 專門性提高와 情報體系構築을 위해 信用調査에 대한 業務基盤을 확충하고, 信用度評價方法의 단계적인 개선을 통하여 信用調査機能을 高度化해야 한다. 또한, 輸出保險의 電算網擴充을 통하여 輸出保險의 資料運用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改善方案이 우리나라의 輸出保險制度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急變하는 國際貿易環境 속에서 輸出保險制度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國際競爭力의 증대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 Management of Export Insurance System in Korea

Jo, Ea-Ja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The Graduate School of Hansung University

The trade friction with advanced countries has become increasingly serious, in accordance with trade circumstances. In an attempt to attain both export expansion and economic growth in the face of such adverse conditions, we cannot but select the export insurance system as the only politic means to surmount it. It was in 1969 that the export insurance system had been introduced in our country, with a full-scale export-driving strategy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With the establishment of export insurance law since then, A rapid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system of export insurance. As economic conditions at home and abroad were changed, there have been five revisions to date for the export insurance law, and the reception items of export insurance have been increased to a items. In an effort for export insurance to attain the goal as prescribed by the export insurance law,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operational problems which the export insurance system has, and to seek for its improvement plan.

As a result of the present managerial situation of export insurance, the

problems can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ly, considering the build-up scale and mortgage power of the export insurance fund, its scale is so poor as to be vulnerable in the export insurance mortgage power, and the civil enterprises' participation in making fund is negative because of building up the export insurance fund which is mainly dependent on government's support.

Secondly, in view of the utilization of export insurance, export shows an increasing tendency year by year whereas the utilization rates for the export insurance are not avoiding laggardliness.

Thirdly, looking into the reception items and areas of export insurance, we find them very monotonous.

Fourthly, in view of compensatory records concerned with the treatment of insurance accident, the rate of export insurance damage is, at present, much higher than that of foreign countries.

Lastly, through investigating the condition of the export insurance credit, we can find the basis of credit investigation uniform.

In addition the areas for credit investigation are limited to some areas.

In order to improve such problems, the following plans can be suggested:

Firstly, it is needed that the mortgage power of export insurance fund should be secured and the close relation with policy-making authorities strengthened, in an effort to effectively attain the goal of the export insurance business.

Secondly, to make compensatory business for export insurance accident effective, we should establish the regulation and articles of the export insurance. In addition, through improving the compensatory and retrieve technique, we should not only make compensatory business effective, but also the post management of export insurance business fortified.

Thirdly, by developing and regulating reception items of the export insurance products, and by expanding the coefficient of utilization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rough the persistent restructuring for the system of the insurance rate, we should expand reception subjects and its areas of export insurance.

Fourthly, in view of not building up recognition completely concerning the export insurance, it is imperative that we activate the activities of publicity respecting the export insurance and fortify the cooperation at home and abroad. And, fostering exports for the export insurance is urgently needed.

The fifth, for specializing the export insurance credit 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not only to secure its business foundation, but to accomplish a highly skilled credit investigation through step-by-step improvement in its evaluating method.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increase efficiency in data application of export insurance by expanding its computer network.

Such improving methods can not solve all the problems our export insurance system has. Thus, we must strive to enhance ou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so that the export insurance system may make progress in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trade circumstance.

參 考 文 獻

- 具河書, 保險學要論, 法文社, 1981.
- 金容福, 貿易實務, 博英社, 1993.
- 金政秀, 海上保險論, 博英社, 1992.
- 方甲秀, 最新保險學, 博英社, 1987.
- 申東洙, 貿易實務, 法經社, 1993.
- 吳元爽 外 共著, 信用狀論, 三英社, 1993.
- 李時煥, 貿易保險論, 大旺社, 1992.
- 李時煥, 權 五 共著, 保險學概論, 新陽社, 1993.
- 張英俊, 現代貿易學原論, 經世院, 1990.
- 趙相元, 1993年 法典, 玄岩社, 1993.
- 保險監督院, 韓國保險市場의 構造, 1992.
- 韓國貿易協會, 貿易年監, 1991.
- 韓國輸出保險公社, 輸出保險, 第1號~第4號, 1992.
- _____, 輸出保險, 第1號~第3號, 1993.
- _____, 中·長期運營計劃(1993~1997年), 1993.
- _____, 年次報告書, 1992.
- _____, 21世紀를 향한 輸出保險의 役割, 1993.
- _____, 韓國輸出保險公社 1周年 記念 심포지엄, 1993.
- 韓國銀行, 1988年 産業關聯表(延長表), 1991.

- 高昌秀, 우리나라 輸出保險制度에 관한 研究, 啓明大 大學院, 1987.
- 高彩錫, 우리나라 輸出保險制度에 관한 研究, 京畿大 大學院, 1986.
- 金英達, 우리나라 輸出保險制度의 活性化方案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 貿易大學院, 1984.
- 金勇男, 우리나라 輸出保險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外國語大 貿易大學院, 1981.
- 金載鳳, 輸出保險制度 實態에 관한 實證的 研究, 西江大 大學院, 1986.
- 金賢達, 韓國의 輸出保險制度에 관한 研究, 延世大 經營大學院, 1982.
- 朴光根, 우리나라 輸出保險制度에 관한 研究, 建國大 大學院, 1982.
- 朴光鎬, 우리나라 輸出保險制度에 관한 研究, 高麗大 經營大學院, 1978.
- 徐達洙, 輸出保險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外國語大 貿易大學院, 1985.
- 吳惠貞, 輸出保險制度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延世大 經營大學院, 1985.
- 楊慶喜, 輸出保險制度 現況分析과 效率化 方案, 淑明女大 大學院, 1981.
- 俞成敬, 우리나라 輸出保險制度에 관한 研究, 啓明大 大學院, 1986.
- 俞重宜, 우리나라 輸出保險의 當面課題, 高麗大 大學院, 1980.
- 尹英燮, 우리나라 輸出保險制度에 관한 研究, 嶺南大 經營大學院, 1987.
- 李相道, 輸出保險의 運營實態와 改善方案, 外國語大 貿易大學院, 1989.
- 趙圭煥, 우리나라 輸出保險制度의 活性化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 貿易大學院, 1986.
- 趙漢淑, 韓國 輸出保險制度의 實態와 改善方案, 釜山大 經營大學院, 1978.
- 全漢秀, 우리나라 輸出保險의 效率化 方案에 관한 研究, 東國大 大學院, 1987.

貿易實務講座刊行會，貿易と保険(貿易實務講座 第五巻)，有斐閣，1966.

加藤修，貿易保険の實務，同文館，1985.

金泥良雄，新貿易關係法，日本評論社，1985.

石田貞夫，中村那論，新貿易取引，有斐閣，1992.

Sundheim Finn A., *How to Insure a Business*, Venture Publications, 1988.

Williams, Alex D,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John Wiley & Sons, INC., 1982.